

주요국의 관세범 처벌 규정에 관한 연구

2014. 9

세 법 연 구 센 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진

연구책임자

정 재 호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김 수 영 관제사

노 영 예 연구원

목 차

I. 서론	9
II. 우리나라의 관세 위반 행위 처벌 규정	12
1. 개관	12
가. 관세법의 성격과 관세의 특징	12
나. 관세 제도의 국제적 조화	13
2. 관세 위반 행위 처벌	15
가. 관세법의 처벌	15
나. 형법과의 관계 및 관세 처벌의 특성	18
다. 특가법에 의한 관세법 가중처벌	22
3. 관세법상 처벌 규정	25
가. 관세 처벌 규정의 개정 동향	25
나. 관세 형벌	26
다. 관세질서벌(과태료)	35
4. FTA 관련 규정 위반 및 처벌	36
가. FTA 특례법	36
나. 특례법상 의무와 위반 시 처벌	38
III. 주요국의 관세법상 벌칙 규정	42
1. 미국	42
가. 관세법 처벌 관련 법률 및 형법 총칙 배제규정	42
나. 관세 형벌의 형태	43
다. 미국 형법상 처벌 규정	45

라. 미국 관세법상 처벌 규정	48
마. 기타 FTA 관련 처벌	51
2. 일본	54
가. 관세법 처벌 관련 법률 및 형법 총칙 배제규정	54
나. 관세 형벌의 형태	54
다. 관세법상 처벌 규정	56
라. 기타 FTA 관련 처벌	61
3. 독일	61
가. 관세법 처벌 관련 법률 및 형법 총칙 배제규정	62
나. 관세 형벌의 형태	63
다. 조세기본법상 처벌 규정	66
라. 기타 FTA 관련 처벌	70
4. 캐나다	71
가. 관세법 처벌 관련 법률 및 형법 총칙 배제규정	71
나. 관세 형벌의 형태	72
다. 관세법상 처벌 규정	74
라. 형법상 처벌 규정	77
마. 기타 FTA 관련 처벌(특별 수입조치법(Special Import Measures Act)상 처벌 규정)	79
5. 싱가포르	81
가. 관세법 처벌 관련 법률 및 형법 총칙 배제규정	81
나. 관세 형벌의 형태	82
다. 관세법상 처벌 규정	84
라. 형법상 처벌 규정	86
마. 기타 규정과 FTA 관련 처벌(수출입법 및 수출입 규정상 처벌)	87
IV. 국제비교 및 시사점	91
1. 국제비교	91

가. 관세 처벌의 근거 법령 등.....	91
나. 특별 처벌 규정.....	92
다. 주요 위반행위별 처벌 규정 비교.....	96
2. 시사점.....	100
가. 초범과 재범 간 구분 처벌(벌금형).....	100
나. 형의 감경 대상자에 대한 규정.....	101
다. 관세 무세품에 대한 처벌 문제.....	102
참고문헌.....	104

표 목 차

〈표 II-1〉 최근 관세범 단속 통계·····	16
〈표 II-2〉 관세형벌에 적용되는 형법의 주요 총칙·····	19
〈표 II-3〉 관세법상 징역과 벌금의 병과 여부 및 미수범 등의 처벌·····	20
〈표 II-4〉 관세법상 관세범 처벌상의 특례(예외규정)·····	21
〈표 II-5〉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가중처벌 내용·····	23
〈표 II-6〉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기타 특례사항·····	24
〈표 II-7〉 전자문서 위조·변조죄 등의 위반 내용 및 처벌 규정·····	27
〈표 II-8〉 밀수출입죄의 위반 내용 및 처벌 규정·····	29
〈표 II-9〉 관세포탈죄의 위반 내용 및 처벌 규정·····	30
〈표 II-10〉 허위신고죄 등(제276조)위반 내용 및 처벌 규정·····	33
〈표 II-11〉 FTA 특례법 위반에 대한 처벌·····	37
〈표 II-12〉 FTA 특례법상 거래당사자별 보관 서류·····	39
〈표 II-13〉 FTA 특례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41
〈표 III-1〉 미국 연방 형법상 관세관련 위반 내용 및 처벌·····	46
〈표 III-2〉 미국 형법상 중죄(Felony) 구분·····	47
〈표 III-3〉 미국 형법상 경죄(Misdemeanor) 구분·····	48
〈표 III-4〉 19. U.S Code 1592에 따른 자수 처벌 유형·····	50
〈표 III-5〉 19. U.S Code 1508 원산지 보관에 따른 FTA별 처벌 유형·····	52
〈표 III-6〉 19. U.S Code 1509(g) 장부와 증거에 대한 심사에 따른 처벌·····	53
〈표 III-7〉 19. U.S Code 1509(f)에 따른 자료보관 인증제도의 인증 요건·····	53
〈표 III-8〉 일본 관세법상 주요 위반행위 처벌·····	59
〈표 III-9〉 독일 조세기본법상 관세 관련 위반행위와 처벌 규정·····	70

〈표 Ⅲ-10〉 캐나다 관세법의 처벌 규정.....	76
〈표 Ⅲ-11〉 캐나다 형법상 수출입 관련 처벌규정.....	78
〈표 Ⅲ-12〉 캐나다 특별수입조치법상 처벌 규정.....	80
〈표 Ⅲ-13〉 싱가포르 관세법상 위반행위와 처벌 수준.....	85
〈표 Ⅲ-14〉 싱가포르 형법(Penal Code)의 수출입 관련 처벌 규정.....	87
〈표 Ⅲ-15〉 싱가포르 수출입법(IEA)의 처벌 규정.....	88
〈표 IV-1〉 관세 처벌의 근거 법령 국제비교.....	92
〈표 IV-2〉 주요국의 관세법상 관세범 특별 처벌 규정의 국제비교.....	96
〈표 IV-3〉 주요 관세범 주요 처벌 규정의 국제비교.....	98

I. 서론

- 우리나라는 관세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조세범 처벌법」에서 제외하여 관세법에 별도로 두고 있으며, 관세법상의 일부 처벌에는 형법 총칙 적용이 배제됨
 - 관세법 제268조의2 내지 제276조에서는 관세형벌을, 비교적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제277조에서 과태료(관세질서벌) 규정을 두고 있음
 - 형법 제8조에서는 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형법 총칙을 적용하지 않음을 규정함
- 관세법 내에 존재하는 관세범 처벌 규정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 상에 관세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이 존재한다는 점, 비교적 경미한 관세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형벌을 적용하는 점 등에 대해 처벌 수위가 높다는 논란이 이어져 왔음
 - 이에 따라 법령의 개정을 통해, 형벌을 부과하던 관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위반 행위가 경미한 경우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처벌 수위가 조정됨
- 한편, 우리나라는 관세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형법과 관세법, 특가법 외에도 관세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례법, 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특례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 등에도 산재해 있어 혼란이 초래될 수 있음
- 또한, 국제적 측면에서는 현재 세계 여러 국가가 개정교토협약¹⁾ 등 통관 행정의 표준화 노력을 통해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어 가고 있으나, 관세범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조화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됨

1) Revised Kyoto Convention, 정식명칭은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통관절차 간소화 및 조화를 위한 국제협정)'임

- 개정 교토협약 특별부속서에 수록된 관세범(H장)은 대부분의 국가가 수락하지 않은 상태이며²⁾ 따라서 이 분야는 국가별 표준화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을 중심으로 하여 관세범의 처벌의 수위와 근거 법령 및 관세범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의 유무, 형법과의 관계 등과 우리나라 관세범 처벌에 있어 특이 사항으로 여겨지는 규정에 대한 주요국의 도입 사례를 조사해 보고자 함
 - 우리나라 관세법상 미수범의 본죄 처벌, 배수형 벌금제, 양벌 규정 등 형법 규정을 배제한 관세법상 규정³⁾에 대해 외국 관세 규정상 입법 여부를 조사함
 - 우리나라와 같이 FTA 특례법을 별개로 운영하는지 여부 및 기타 관련 규정상 관세범 처벌에 대한 규정의 유무 및 내용을 살펴봄
- 조사 대상국으로는 영미법계 국가인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등 3개국을 선정하였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독일(EU) 등 2개 대륙법계 국가를 선정하여 살펴보았음
- 다만, 각국은 법체계가 상이하며, 국가의 발전 역사와 산업 구조, 환경 등이 매우 다르므로 처벌 수위의 단순한 비교를 통해 개선방안과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에는 한계와 위험부담이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법률적 측면보다는 관세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관세범 처벌 규정에 대한 접근임을 명확히 하는 것임
 - 본 연구는 현행 제도의 보완 또는 개선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관세 연구의 일종으로 처벌 관련 분야에 대한 기본 연구 목적이 있음
- 본 보고서는 제I장 서론을 포함한 4개의 장으로 구성됨

2) www.wcoomd.org, Position as regards ratification and accessions(at 20 February 2014, PG0235E1a) 2014년 현재 협약 가입국인 93개국 중 18개국만 특별부속서 H장(관세범)을 수락함 (유보 있는 수락 포함)

3) 배수형 벌금제, 양벌 규정 등은 조세범 처벌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조세범 처벌법 규정은 제외한, 관세법상의 관세범 처벌 규정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기로 함

- 제Ⅱ장에서는 우리나라 관세 형벌의 정의 및 특수성에 대해 살펴보고 관세 위반행위 처벌 규정에 대한 세부 내용을 기술함
- 제Ⅲ장에서 주요국으로 미국, 독일,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의 관세법 처벌 규정에 대해 조사함
 - － 각국 관세법 처벌에 있어 관련 법률, 형법 총칙의 배제 여부, 관세법상 처벌 내용, 미수범·방조자 등의 처벌 규정 및 기타 특이 사항에 대해 살펴봄
- 제Ⅳ장에서는 주요국 처벌 규정에 대한 국제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어, 향후 우리나라 관세법 처벌 규정의 개정 시 고려해 볼 만한 사항에 대한 소견을 제시함

Ⅱ. 우리나라의 관세 위반 행위 처벌 규정

1. 개관

가. 관세법의 성격과 관세의 특징⁴⁾

- 「관세법」은 제1조에서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 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목적에 따라 관세법은 복잡한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행정법적 성격, 조세법적 성격, 국제거래법적 성격, 통관절차법적 성격, 형사법적 성격을 지님
 - 관세법은 관세행정을 대상으로 하여, 관세의 부과·징수 및 통관 조치에 적용됨
 - 관세법은 통관 과정에서 법률에 의해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전적 부담인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국제거래에 영향을 미침
 - 권력 행사 또는 분쟁 해결을 위한 기준을 정해 실체법적인 성격과, 절차를 정해 놓아 절차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
 - 관세법 제268조2 내지 제319조까지 관세법의 벌칙 및 조사, 처분에 관한 규정을 두어 범죄의 요건과 범죄에 관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법적인 성격을 가짐
- 또한, 관세는 국제기구 또는 다른 나라와 관련성을 지녀 국제성이 높고, 재정 수입과 산업 정책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특징이 있으며, 무역 장벽 기능을 수행하는 국경세이며, 수입 시마다 부과되는 수시세임
 - 관세의 징수는 WTO 협정, FTA 협정 등 다수의 국제협정으로부터 직접적인 제약을

4) 정재완, 『관세법』, 2014.01

받으며, WTO에서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등 부과요건을 직접 규율한다는 점에서
기타 조세와 차별성을 가짐

- 관세는 재정수입 또는 산업보호 및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수단으로 활용됨

나. 관세 제도의 국제적 조화

1) 개정교토협약

- 1999년 세계관세기구(WCO⁵⁾)에 의해 채택된 개정 교토협약(Revised Kyoto Convention)
이 2006년 발효되어, 2014년 현재 93개국이 가입한 상태임
 - 개정교토협약은 통관절차의 표준화, 신속화·간소화, 정보기술의 최대 활용 등을
주요원칙으로 함
- 개정 교토협약은 협약 내용의 이행을 의무화한 점이 특징이며, 특별부속서에 대해서만
유보가 가능하고, 일반부속서에 대해서는 유보가 불가능하도록 규정함
 - 일반부속서는 통관절차의 일반원칙으로 통관 및 기타 세관절차, 관세와 제세, 담보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 특별부속서⁶⁾에서는 통관절차의 세부사항으로 보세구역 및 일시 수입, 범칙행위, 여
행자 및 우편물 등의 특별통관절차, 원산지 규정에 대한 내용을 마련함
- 우리나라는 2003년 2월 개정 교토협약에 가입하였으며 특별부속서 중 “동일상태 재수
입, 보세운송, 물품의 연안운송, 국내가공, 국외가공, 내수용 물품의 가공, 관세법, 여행
자, 원산지 규정, 원산지 증명서류, 원산지 증명서류 통제” 등 11개 장은 수락하지 않고
그 외 14개 장을 수락함

5) World Customs Organization

6) 특별부속서는 20개의 chapter로 구성되어 있으며 chapter별로 수락이 가능하며 수락한 chapter 내
에서도 일부 조항에 한해 유보가 가능함

2) WTO 양허세율

-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의 회원국으로 WTO의 권한과 구속력에 영향을 받아 반덤핑 규제, 관세 인하 요구에 따르며, 수입물품에 WTO 가입국 간 수출입 시 협정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1995년 WTO의 출범 당시부터 76개 회원국 중 하나였으며, WTO는 2014년 현재 160개국이 가입⁷⁾되어 있음
 - WTO 협정 관세율은 우리나라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서 정한 기본 세율보다 낮은 경우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수입 물품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함
- 또한, 수입물품의 관세 평가(Customs Valuation)에 있어서도 가입국은 'WTO 관세평가협정'을 따르고 있으며, 덤핑방지관세 · 상계관세 · 보복관세 등의 부과요건을 직접 규율하고 각국은 이를 자국 관세법에 수용함
 - 각국에서는 동일한 방법으로 수입 물품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음
 - － 이에 우리나라는 본 관세 평가방법(제1방법 내지 제6방법)⁸⁾을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에 도입함
 - 우리나라 관세법 제51조 이하에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등을 비롯한 WTO에서 규율하는 관세의 부과 대상 등에 관한 조항을 마련하고 있음

3)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제도

- 2001년 미국의 9.11 테러 이후 테러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과 함께, 2005년 세계관세기구(WCO)는 SAFE FRAMEWORK에서 AEO제도를 채택함
 - 이에 현재까지 약 60여개국이 AEO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안전과 보안을 국가로부터 보장받은 AEO 인증 업체는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받을 뿐 아니라,

7) www.wto.org, 2014.06

8) 제1방법: 당해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동종 · 동질물품의 거래가격(제2방법),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제3방법), 국내판매가격(제4방법), 산정가격(제5방법), 합리적 기준(제6방법)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따름

국제 경쟁력이 강화되어 원활한 수출입 활동을 기대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 캐나다, 일본 등 9개국과 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인을 받은 업체는 상호 상대 국가에서도 세관 절차에서 동일한 특혜를 기대할 수 있음

2. 관세 위반 행위 처벌

가. 관세범의 처벌

1) 관세범

- 관세범(關稅犯)이란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관세법에 따라 형사처벌되거나 통고처분⁹⁾되는 것을 말함¹⁰⁾
 - 따라서 현행 관세법은 관세범을 혐의로 파악하여 관세형벌이 과해지는 관세형사범에 한정하고 있음¹¹⁾
 - － 2006. 12 개정 전 관세법에서는 “관세범이라 함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이 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함

9) 조세에 관한 범죄사건의 조사결과 범죄의 심증을 얻은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고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이나 몰수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 서류송달, 압수물건의 운반·보관의 비용 등을 지정장소에 납부할 것을 통고하는 세관장의 행정처분

10) 관세법 제283조 제1항

11) 박영기, 『관세제재법』, 2009

〈표 II-1〉 최근 관세범 단속 통계

(단위: 건, 억원)

구분		2012년		2013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수입	밀수입 ¹⁾	1,177	1,674	1,301	2,989
	관세포탈	358	2,203	419	3,676
	부정감면	92	2,871	171	97
	부정환급	11	308	17	1,757
	수입조건 위반	106	696	128	2,027
	밀수품 취득 등	95	38	68	83
	소계	1,839	7,790	2,104	10,629
밀수출		130	1,011	119	1,465
합계		1,969	8,801	2,223	12,094

주: 1) 여행자 밀수입까지 포함된 수치로,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음
 자료: 관세청

- 관세범죄의 성립요건은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의 요건을 갖추며, 관세범에는 그 밖에 형사범죄에 대해 적용되는 죄형법정주의 원칙 또한 적용됨
 - 구성요건 해당성은 행위자의 고의와 범죄와 행위의 인과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 관세범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조직성, 전문성, 지능성, 국제성을 갖춘 영리범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¹²⁾, 자연범이 아닌 법정범임¹³⁾
 - 관세범은 시대에 따라,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이나 형벌규정이 달라지고 새로운 유형이 생기거나 없어지는 등 국내외의 경제정세 변동에서 기인하므로 유동적인 범죄임
 - 밀수범의 경우 대체적으로 점조직으로 되어 있으며 특수범죄 단체화되어 있으며 폭

12) 대판 99도424

13) 자연범은 법규에서 범죄로 규정하기 이전에 이미 성질상 도의적 규범에 위반되는 범죄이며, 반면 법정범은 그 행위 자체는 반드시 반사회적·반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행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에 규정된 의무에 위반되기 때문에 벌을 받게 되는, 즉 법률상의 범죄임

력 조직화되어 있는 등 조직성을 가지고 있음

- 각종 법령상의 규제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회피하고자 국내외 관련 법령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이 필요하며 전문적·국제적인 성격이 강한 범죄임¹⁴⁾
- 밀수범은 일반 재산범죄와 다르게 단순히 경제적인 빈곤 타개가 목적이 아니라 보다 나은 경제적 욕망의 충족을 위해 범행하는 영리범임
- 외국의 음란도서·조형물·비디오테이프 등이 밀수될 경우 사회적·문화적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으며 특히 농수축산물인 경우 국내 산업을 피해를 시킬 수 있는 등 해악성을 띠고 있어 다른 범죄와 구별됨

2) 처벌 관련 법령

- 우리나라는 관세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 및 과태료 처벌 근거를 관세법 제11장 벌칙(제268조의2 내지 제282조)에 두고 있음
 - 관세벌은 징역 또는 벌금(또는 병과)이 부과되는 관세형벌과, 과태료가 부과되는 관세질서벌(관세행정벌)로 나눌 수 있음
- 조세법 처벌법에서 제2조에서 “조세란 관세를 제외한 국세를 말한다.”고 하여 관세벌을 조세법에서 제외¹⁵⁾함으로써, 관세 위반 행위 처벌에 있어 조세법 처벌법은 적용되지 않음
- 관세벌 중 형벌(징역·벌금·몰수)을 과함에 있어,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총칙 규정이 그대로 적용됨
 - 형법 제8조에 “본법 총칙은 타 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함

14) 최용채, 「관세행정상의 조사업무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2004

15) 조세법 처벌법 제정 당시에는 관세 제외 규정이 없었으나, 1962년 개정부터 관세 제외 규정이 들어감

- 형법과 관세법 외에도 관세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특가법은 형법, 관세법 등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 유지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특가법 제6조에 따라 관세법상 금지품수출입죄, 밀수출입죄, 관세포탈죄 등에 대해 대상 물품의 원가가 일정 금액¹⁶⁾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함
- 그 밖에도 관세 관련 법률이자 관세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례법인 「FTA 특례법」 및 「환급 특례법」에도 관세 관련 위반 행위에 관한 형벌 등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나. 형법과의 관계 및 관세 처벌의 특성

- 관세형벌(징역·벌금·몰수)을 과함에 있어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형법의 총칙규정이 그대로 적용됨
 - 형법 제8조에 “본법 총칙은 타 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함
 - 형법 총칙은 형법 제1편(제1조 내지 제86조)에 규정되어 있는 원칙임
- 관세법에서는 제278조에서 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관세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 형법의 총칙을 따르지 않도록 되어 있으므로 형법의 총칙이 배제됨

16) 금지품수출입죄 - 물품가액 1억원, 밀수입죄 - 물품 원가 2억원 및 5억원, 밀수출죄 - 물품 원가 5억원 등

〈표 II-2〉 관세형벌에 적용되는 형법의 주요 총칙

구분	내용	
죄형 법정주의	- 범죄와 형벌은 미리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형법의 기본 원칙	
범죄의 성립요건	①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② 위법성이 있어야 하며, ③ 그 책임이 있어야 함 - 고의 및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단, 과실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형법 제14조) - 위법성 조각사유: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 형사미성년자(14세 미만), 심신장애자, 강요된 행위는 책임을 묻지 않고 심신미약자와 농아자는 형 감경 등	
미수범, 공범 등에 대한 처벌	음모, 예비(제28조)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함
	미수범(제25조)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 미수범으로 처벌하며,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 가능
	공동정범(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
	교사범(제31조)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
	종범(제32조)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며,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
경합범과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처벌(제37조 내지 제40조)	-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음.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음 -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 -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과 벌금의 병과(제38조)	-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 형기 또는 액수를 병과할 수 있음 - 관세범은 징역 또는 벌금형을 과하므로 형법의 본 조항에 따라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음	
범죄 관련 물품의 몰수·추징	-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①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②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되었거나 이로 인해 취득한 물건, ③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게 규정함 - 만일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함(제48조)	

자료: 정재완, 『관세법』, 2014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수정

- 형법에서는 미수범에 대해 기수범에 비해 감경된 형을 적용할 수 있으나, 관세법에서는 미수범에 대해 중대범죄의 경우 본죄에 준해 처벌하고 있음
- 예비행위가 착수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으나 관세법에서는 예비 행위만으로도 본죄에 대한 형벌의 2분의 1에 해당되는 처벌을 하고 있음
- 교사범 및 방조범의 경우에도 관세법에서는 범죄 행위에 따라 정범에 준해 처벌하는 반면, 형법에서는 방조범을 종범으로 보아 형을 감경해주고 있음

〈표 II-3〉 관세법상 징역과 벌금의 병과 여부 및 미수범 등의 처벌

죄명	행위자	교사자와 방조자	미수범	예비범	과실범
전자문서위·변조죄 등	징역 또는 벌금	×	처벌	감경처벌	×
밀수출입죄	징역과 벌금 병과	둘 다 처벌	처벌	감경처벌	×
관세포탈죄 등	징역과 벌금 병과	둘 다 처벌	처벌	감경처벌	×
가격조작죄	징역과 벌금 병과	×	×	×	×
밀수품의 취득죄	징역과 벌금 병과	×	처벌	감경처벌	×
체납처분면탈죄 등	징역 또는 벌금	방조자 처벌	×	×	×
타인에 대한 명의대여죄	징역 또는 벌금	×	×	×	×
허위신고죄 등	벌금	×	×	×	처벌

자료: 정재완, 『관세법』, 2014

- 관세법 제275조에서 징역과 벌금의 임의적 병과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6조 제1항에서는 밀수출입죄, 관세포탈죄 등 부정수입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며 제6항에서 위 죄에 따른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를 규정하고 있음
-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규정은 1951년 12월 6일 개정관세법에서부터 규정하여 왔음

○ 관세법상 징역과 벌금의 병과 대상 범죄는 밀수출입죄, 관세포탈죄, 밀수출입죄 및 관세포탈죄의 미수범·예비범·밀수품의 취득죄 등임

〈표 II-4〉 관세법상 관세법 처벌상의 특례(예외규정)

구분	내용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 배제 (관세법 제278조)	- 관세법에 따른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즉, 관세법에 대해 벌금처벌할 경우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양벌규정 적용 (제279조)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관세법에서 규정한 벌칙(제277조 과태료 제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함 - 개인이란 특허보세구역 또는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 수출·수입 또는 운송을 업으로 하는 사람, 관세사, 개항 안에서 물품 및 용역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람,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및 전자문서중계사업자	
미수범과 예비범, 교사범, 방조범, 과실범의 처벌	미수범 (제271조)	관세법은 중대범죄로 간주되는 전자문서 위·변조, 밀수출입죄, 관세포탈죄 등 죄의 미수범은 본죄에 준해 처벌
	예비범 (제271조)	같은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한 자는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해 처벌
	교사범, 방조범 (제271조)	관세법은 수출입죄 및 관세포탈죄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도 정범에 준해 처벌함
	과실범 (제276조)	관세법에서는 허위신고죄 등에 대해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범죄관련 물품의 몰수와 추징	- 범죄에 이용된 운반기구 등 몰수: 밀수출입에 전용되는 선박·자동차 기타 운반기구는 그 소유자가 범죄에 사용되는 것을 알고 있고 범죄물품을 적재하거나 적재하고자 한 경우, 범죄 물품을 운반한 경우 등에 해당될 경우 - 운반기구가 아니라도 밀수출입에 사용하기 위해 특수 가공한 물품은 누구의 소유이던지 이를 몰수하거나 그 효용을 소멸(제273조) - 범죄물품 몰수: 수출입금지품을 밀수출입한 경우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를 막론하고 몰수하도록 함. 몰수대상임에도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죄 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함	
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275조)	- 밀수출입죄, 관세포탈죄 등, 가격조작죄, 미수범 등, 밀수품의 취득죄 등의 경우 정상(常狀)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음 - 전자문서 위·변조, 체납처분면탈죄 등, 타인에 대한 명의 대여죄, 허위신고죄 등에 대해서는 징역과 벌금의 병과가 인정되지 않음	

자료: 정재완, 『관세법』, 2014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수정

- 관세법 내 존재하는 양벌규정은 업무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사용인 등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법규 위반 행위를 한 경우 그 직접 행위자인 사용인 등을 처벌하는 외에 업무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하는 규정임
- 양벌규정은 법인 기업에 대한 양벌규정과 개인 기업에 대한 양벌규정으로 나뉘는데 우리나라는 법인 기업과 개인 기업을 통합¹⁷⁾하여 규정하고 있음
 - 면책규정을 두어,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하지 않음
- 우리나라 형법상 몰수·추징은 임의적 몰수·추징이며, 예외적으로 제134조 등에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관세법상의 몰수·추징은 필요적 몰수·추징임(단, 제273조(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등)은 임의적 몰수임)¹⁸⁾
 - 몰수는 범죄행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형으로 다른 형에 추가해 과하는 부가형임

다. 특가법에 의한 관세법 가중처벌¹⁹⁾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관세법을 비롯하여 형법, 조세범처벌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한 특례법임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제6조에서 관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음
- 관세법에서 가중처벌을 받는 규정은 금지품수출입죄, 밀수입죄, 밀수출죄, 관세포탈죄, 허위신고죄 및 교사범·방조범·미수범의 죄이며, 그 처벌 대상은 대체로 위반 행

17) 2008.12.26. 관세법 제280조를 삭제하면서 내용을 제279조(양벌규정)에 통합

18) 법무법인 광장, 『관세형법의 개선방안』, 2009

19) 정재완, 『관세법』, 2014

위 관련 물품의 금액, 포탈한 세액 등이 고액일 경우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은 관세사법에 대한 처벌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몇 가지 예외를 특례로 규정하고 있음
- 기타 특례 사항에는 총기사용제한의 완화, 무고죄에 대한 처벌 강화, 직무유기에 관한 처벌 강화, 공소제기의 예외 인정 등이 있음

〈표 II-5〉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가중처벌 내용

위반 내용	처벌 규정
금지품 수출입죄(관세법 제269조 제1항)	물품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하며 본죄의 미수범도 그 정범 또는 본죄에 준해 처벌함 － 수출 또는 수입한 물품의 가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 수출 또는 수입한 물품의 가액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밀수입죄의 가중처벌(관세법 제 269조 제2항)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하며 본죄의 미수범도 그 정범 또는 본죄에 준해 처벌함 － 수입한 물품 원가가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 수입한 물품 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밀수출죄의 가중처벌(관세법 제 269조 제3항)	수출 또는 반송한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인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수출 또는 반송한 물품원가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하며 본죄의 미수범도 그 정범 또는 본죄에 준해 처벌함
관세포탈죄의 가중처벌(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동조 제 4항, 동조 제5항)	포탈·감면·면탈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하며 본죄의 미수범도 그 정범 또는 본죄에 준해 처벌함 － 포탈·감면·면탈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2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 포탈·감면·면탈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허위신고죄의 가중처벌(관세법 제 270조 제1항 제2호 및 동조 제2항)	수입제한 회피를 위한 거짓신고 또는 수입요건 미구비 또는 부정구비죄를 범한 자는 수입원가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하며 본죄의 미수범도 그 정범 또는 본죄에 준해 처벌함 － 수입한 물품 원가가 5억원 이상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 수입한 물품 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교사범·방조범 · 미수범의 죄(관세법 제271조)	교사범·방조범·미수범의 죄는 그 정범 또는 본죄에 준해 처벌하며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으로 밀수출입죄, 관세포탈죄, 허위신고죄, 미수범 등(관세법 제 269조 혹은 제271조)의 죄 또는 밀수품의 거짓취득죄(제274조)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자료: 정재완, 『관세법』, 2014

- 관세법 위반사범 단속 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는 해상에서 밀수출입죄 또는 관세 포탈죄를 범한 자가 도피할 때 관세 공무원이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해상 밀수단속 권한을 대폭 확대하였음
 - 또한 무고죄에 대한 처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밀수단속을 하는 공무원들이 무고에 의해 직무수행이 방해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함
- 직무유기와 관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는 특수직무유기죄를 두어 밀수범을 보호하는 공무원을 가중처벌하도록 함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관세사범에 대한 공소제기의 예외를 두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고발 없이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함

〈표 II-6〉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기타 특례사항

관세법 및 형법 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특례
관세법 제267조: 세관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히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와 공무집행에 대한 방해 또는 저항의 억제에 위해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사태에 응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총기를 사용할 수 있음	제7조: 관세법 위반사범을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은 해상에서 밀수출입죄 또는 관세포탈죄 등을 범한 자가 정지명령을 받고 도피하는 경우 이를 제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총기를 사용할 수 있음
형법 제156조: (무고)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원에 대해 거짓으로 사실을 신고한 자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제14조: 관세사범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죄에 대해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
형법 제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함	제15조: 범죄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인지하고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관세법 제284조: 관세법에 관한 사건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고발이 없는 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제16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관세사범에 대해서는 공소에 고소 또는 고발을 요하지 않음

자료: 정재완, 『관세법』, 2014

3. 관세법상 처벌 규정

- 관세벌(관세행정벌)은 징역 또는 벌금(또는 병과)이 부과되는 관세형벌과 과태료가 부과되는 관세질서벌로 구분됨
 - 관세형벌은 관세법령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형법에 명칭이 있는 형벌이 과해지는 것임²⁰⁾
- 관세법상 처벌 규정은 제268조의2 전자문서 위조·변조죄 등부터 276조 허위신고죄(관세 형벌)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제277조에서는 과태료(관세질서벌)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제271조에서는 미수범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272조, 제273조는 각각 밀수 전용 운반기구의 몰수와 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75조는 징역과 벌금의 병과를 규정하고 있음

가. 관세 처벌 규정의 개정 동향

- 관세법상 관세처벌 규정은 벌금형이 과태료 부과로 전환되어 완화되고 있으며, 형사미성년자 등에 대한 벌금 비감경 규정이 삭제되는 등 일부 규정은 형법 규정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다소 완화되고 있는 추세로 파악할 수 있음
 - 관세형법의 구성은 1996년 당시 수출입면허제도가 수출입신고제도로 바뀌면서 관세형벌도 수출입신고 여부를 기준으로 크게 변화하였음
 - － 관세형벌의 절차는 199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크게 변화했고 그 내용이 현재 관세형법에 수용되어 있음
- 비교적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관세법 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벌금형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형을 감경하는 추세임

20) 정재완, 『관세법』, 무역경영사, 2014.01

- 또한 과거 징역형 위반 행위가 벌금형으로 전환된 경우도 있음
 - 징역형이 부과되던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죄는 1996년 벌금형으로 전환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음(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
- 기존 형사미성년자·심신장애자·농아자 등이 관세법 위반 시 벌금형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2010년부터는 이를 완화하여 형법에 따라 형을 면제 또는 감경받을 수 있게 함
- 밀수출입죄, 관세포탈죄 등을 예비한 자에 대해 본죄에 준해 처벌하던 규정도 2010년부터는 형의 2분의 1로 감경하여 처벌하도록 완화함
 - 형법에서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않음
- 최근 개정동향을 살펴보면, 종전 금지품 수출입죄에 대해서 10년 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으로 규정되어 징역기간과 벌금 간 균형이 맞지 않다는 논란이 있어, 자유무역지역법을 참고하여 7년 징역 또는 7천만원 벌금으로 개정을 추진 중임
 - 다른 형사법이 징역 1년을 벌금 1천만원으로 계산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고 있음

나. 관세 형벌

1) 전자문서 위조·변조죄 등(제268조의2)

- 수출입 통관 업무는 전자자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전자자료를 보관, 처리하는 자의 역할이 중요함
- 국가 관세종합 정보망이나 전자문서 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사용하였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지정을 받지 않고 국가 관세 종합정보망을 운영하거나, 전자문서 중계업무를 수행, 전자문서 관련 정보를 훼손하였을 경우 및 직원으로서 전자문서 관련 비밀을 누설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표 II-7〉 전자문서 위조·변조죄 등의 위반 내용 및 처벌 규정

위반내용	처벌 규정
관세법 제327조의4 제1항 국가 관세 종합정보망이나 전자문서 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 설비에 기록된 전산문서 등 관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한 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관세법 제327조의2 제1항 지정을 받지 않고 국가 관세 종합정보망을 운영하거나 관세법 제327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관세청장의 지정을 받지 않고 전자문서 중계업무를 행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세법 제 327조의4 제2항 국가 관세 종합정보망 또는 전자문서 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 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를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한 자	
관세법 제327조의4 제 3항 업무상 알게 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국가 관세 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또는 전자문서 중계사업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	

자료: 관세법

2) 밀수출입죄(제269조)

- 통상 밀수라고 함은 마약류나 총기류와 같이 법에 의해서 수출입 자체가 불법적인 것으로 규정된 품목을 몰래 수출입하는 경우 및 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거나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수출입 하는 경우를 통칭함²¹⁾

21) 김재식, 「관세법상 수출입금지품 관련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창간호, 2000

- ☐ 관세법상 밀수출입죄는 금지품 수출입죄, 무신고 수출입죄를 포함하고 있으며 보통 밀수출입죄라고 하면 무신고 수출입죄를 가리키고 있음
- ☐ 수출입금지품을 수입함으로써 금지품 수입죄를 범한 것은 수입 금지품을 우리나라 영역 내에 반입함으로써 범죄행위는 완료되는 것이고 범행이 완료된 후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였다 해도 범죄행위는 소멸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음²²⁾
- ☐ 수출입금지품을 수출입하였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관세법상 수출입금지물품은 관세법 제234조에 규정되어 있음
 - － ①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②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③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 ☐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하였거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됨
- ☐ 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출 또는 반송하거나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됨

22) 대법원 1960. 2. 17 선고3293형상 834판결

〈표 II-8〉 밀수출입죄의 위반 내용 및 처벌 규정

위반내용	처벌 규정
수출입 금지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자 단, 제253조 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함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또는 병과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또는 병과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출물품 또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자료: 관세법

3) 관세포탈죄(제270조)

- ☐ 관세법에서는 관세포탈죄 등을 관세포탈죄, 부정수출입죄, 부정감면죄, 부정환급죄 등을 포괄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음
 - 관세포탈죄의 처벌에 있어 정상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음
- ☐ 관세 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수입하였을 경우, 거짓으로 사전심사를 신청, 수입제한을 피하기 위해 부분품 또는 미완성·불완전 물품 등으로 수입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됨
- ☐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수출건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감면을 받거나, 관세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 징수를 면

탈,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환급을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감면받거나 면탈, 환급 받은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됨

〈표 Ⅱ-9〉 관세포탈죄의 위반 내용 및 처벌 규정

위반 내용	처벌 규정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 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또는 병과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서류를 갖추어 제86조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를 신청한 자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불완전한 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
수출신고를 하였으나 법령에 의해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기타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감면을 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감면받거나 면탈, 환급받은 관세액의 5배 이하 상당 벌금 또는 병과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자	

자료: 관세법

4) 가격 조작죄(제270조의2)

- 수출·수입·반송 신고(관세법 제241조 제1항, 제2항) 또는 입항 전 수입신고(관세법 제244조 제1항)를 할 때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청 또는 신고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정상에 따라 양자 병과가 가능함

- 세액납부 및 보정신청(관세법 제28조의2 제1항, 제2항), 수정신고(관세법 제38조의3 제1항)를 할 때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청 또는 신고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정상에 따라 형의 병과가 가능함

5) 밀수품의 취득죄 등(제274조)

- 관세법 제269조 밀수출입죄 등에 해당되는 물품을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며, 정상에 따라 형의 병과가 가능함
-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3항과 관련하여 거짓으로 분할수입, 요건을 갖추지 않거나 부정으로 갖추어 수입하고 혹은 수출한 물품을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며, 정상에 따라 형을 병과할 수 있음

6) 체납처분면탈죄 등(제275조의2)

- 체납처분의 면탈죄는 처음부터 관세포탈을 의도하여 범죄가 탄로났을 때 부족세액 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행위 및 조력자에 대한 처벌 규정임²³⁾
- 납세 의무자 또는 납세 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 또는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관세법 제303조 제2항에 따른 압수물건의 보관자 또는 국세징수법 제38조에 따른 압

23) 정재완, 『관세법』, 2014

류물건의 보관자가 보관한 물건을 은닉·탈루·손괴 또는 소비하였을 때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관세법 275조의2 제1항, 제2항의 사정을 알고도 이를 방조하거나 거짓 계약을 승낙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7) 타인에 대한 명의 대여죄(제275조의3)

- 체납처분의 면탈죄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관세포탈을 의도한 자가 재산이 없는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해 거짓으로 통관하는 경우, 명의를 빌려줌으로써 조력한 자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으로 볼 수 있음
-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 등을 포함함)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8) 허위신고죄 등(제276조)

- 관세법 제 276조의 허위신고죄는 다른 관세범죄와 다르게 밀수품·부정수출입물품의 수출입 또는 관세수입의 감소와 같은 부정적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음에도 처벌하는 형식범이라고 볼 수 있음
- 관세법에 규정된 각종 의무의 위반 및 세관장의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죄 중 비교적 죄질이 무거운 경우 허위신고죄에 따라 처벌함

〈표 II-10〉 허위신고죄 등(제276조)위반 내용 및 처벌 규정

조항	위반 내용	처벌 규정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한 자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
	종합보세구역 운영인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운영인이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과 관련해 반입·반출되는 물량의 감소 등을 이유로 세관장의 종합보세구역 기능수행 중지조치를 위반하여 종합 보세기능을 수행한 자	
	보세구역반입명령에 대해 반입대상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입하지 아니한 자	
	수출·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함에 있어서 제241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한 자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 운송수단·관세통로·하역통로 또는 관세법에 규정된 장치장소로부터 신고된 물품의 반출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제276조 제3항	부정한 방법으로 적하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자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서류 보관의무 위반자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재수출 감면을 받은 물품을 세관장의 승인 없이 재수출 감면기한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양도의 금지규정 위반자	
	법령이나 조약·협정 등에 의해 관세가 감면된 물품을 세관장의 확인 없이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해당 법령이나 조약·협정 등에 규정된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양도의 금지규정 위반자	
	단, 해당 물품을 직접 수입한 경우 관세를 경감받을 수 있고 수입자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는 과태료 처분대상임	
	세관장의 허가 없이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의 출입 금지 규정 위반자	과실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출항 시의 적재물품목록의 제출의무 규정 위반자	
	국경출입차량의 관세통로 경유 및 통관역 또는 통관장 정차의무규정	과실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의무 또는 화물운송주선업자 및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선박회사나 항공사와 그 업무대행자의 신고의무 위반자	
	용도세를 적용물품의 용도의 사용 또는 양도금지 규정 위반자	
	외교관 면세물품의 용도의 사용을 위한 양수의 금지 규정 위반자	
	재수출면세물품의 용도의 사용 또는 양도금지 규정 위반자	
	감면받은 물품의 사후관리기간 내 용도의 사용 또는 양도의 금지규정 위반자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입 후 특정한 용도에의 사용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 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문서로써 해당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 경우 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거나 등록한 경우	
	자율심사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표 II -10〉의 계속

조항	위반 내용	처벌 규정
제276조 제4항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 무역기의 입항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출항허가를 거짓으로 받은 자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실의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의 입항보고 의무 위반자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가 출항하기 전 출항허가를 받을 의무 위반자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운영하는 예약정보시스템의 승객예약자료 열람 또는 제출요구에 응할 의무 위반자 단, 과실로 여객명부 또는 승객예약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함	
	입항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대한 물품의 하역 또는 환적 금지,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고자 할 때의 신고의무, 허가없이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내국 물품을 적재하거나 내항선 또는 내항기에 외국물품 적재의 금지규정 위반자	
	외국물품을 일시 양륙할 때의 신고의무 및 외국물품을 적재한 운송수단에서 다른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환적 또는 복합환적하거나 사람을 이동시키는 경우의 신고할 의무 위반자	
	외국무역선이 개항의 바깥에서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고자 할 때 허가받을 의무 위반자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 무역기를 내항선 또는 내항기로 전환하거나, 내항성 또는 내항기를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로 전환하고자 할 때 승인받을 의무 위반자	
	국경출입차량이 통관역 또는 통관장을 출발하고자 할 때 출발허가를 받을 의무 위반자	
	통관역 또는 통관장에서 외국물품을 차량에 하역할 때 신고할 의무 위반자	
	보세운송 시의 신고 또는 승인을 받을 의무 위반자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 여객명부·적하목록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을 때 이를 제출할 의무 위반자	
	종합보세구역 반출입물품, 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세관의 관리 또는 운송수단의 출발중지 규정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표 II -10〉의 계속

조항	위반 내용	처벌 규정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관세 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 이용에 따른 신고필증을 발급 받은 자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세법 및 환급 특례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세관장이 물품·운송수단 또는 장치 장소에 관한 서류의 제출, 보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출입자·판매자 기타 관계자에 대해 관계자료를 조사하게 하는 경우로서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세관 공무원이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 물품·운송수단·장치장소 및 관계장부·서류를 검사하거나 봉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행하는 경우로서 그 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세관공무원이 관세법에 규정된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 수출입자·판매업자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해 문서화되거나 전산화된 장부·서류 등 관계자료를 조사하거나 그 제시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그 제시요구 또는 제출요구를 거부한 자	
제276조 제5항	등록하지 아니한 보세사의 근무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료: 관세법

다. 관세질서벌(과태료)

- ☐ 관세법 제277조에 규정되어 있는 관세질서벌은 비교적 경미한 위반 행위 등에 대해 형벌이 아닌 과태료 처분을 가하는 것이며, 과태료는 세관장이 부과·징수함
- ☐ 세관장이 특수관계자에게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 선·기장이 외국에 기착 후 우리나라에 돌아왔을 때 보고를 하지 않거나 적재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선용품 또는 기용품 및 외국무역선·외국무역기 내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하역 또는 환적할 때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의 내용대로 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보세공장 또는 보세건설장 외 작업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와 종합보세구역 외 보세작업의 신고를 하지 않고 지정 구역 외에서 작업을 한 자도 동일한 과태료 처분을 함

□ 유통이력 신고 의무를 위반해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자, 유통이력장부기록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을 위반한 운영인, 자율심사 결과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 용도세율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가 세관장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등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운송수단의 물품취급시간이 아닌 때에 물품을 취급하려는 자가 사전에 세관장에게 미리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한 과태료 처분이 됨

□ 적재물품과 일치하지 않는 적하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자, 서류 보관 의무를 위반하여 신고필증을 보관하지 않은 자, 잠정신고에 따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4. FTA 관련 규정 위반 및 처벌

가. FTA 특례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특례법')은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이에 필요한 관세의 부과·징수 및 감면, 수출입 물품통관 등 관세법의 특례사항과 체약 상대국과의 관세행정 협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임

□ 칠레와 최초로 FTA를 발효하며 2004년에 제정되었던 한-칠레 FTA 특례법²⁴⁾은 추후

다양한 FTA가 체결되면서 2010년 모든 FTA를 포괄하는 「FTA 특례법」으로 일원화 되었음

- FTA 특례법은 관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특례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FTA 특례법 또는 관세법이 협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함
-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관세법의 형법규정 배제, 관세법의 조사와 처분 규정을 준용함

〈표 II-11〉 FTA 특례법 위반에 대한 처벌

벌칙조항	위반 사항	처벌
제22조 제1항	－ 세관공무원과 원산지증명서 발급 담당자가 수입자·수출자·생산자, 계약상대국의 권한기관이 원산지결정, 관세 부과·징수, 통관 목적 제출자료(비밀취급자료)를 제출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용도 외 사용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2조 제2항 제1호	FTA 및 FTA 관세특례법에 따른 원산지 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발급한 자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2조 제2항 제1호, 제3호	－ 용도세율 적용 물품을 해당 용도 외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자 － 관세면제물품을 해당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자. 단 해당물품을 직접 수입한 경우에는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자는 제외(과태료 처분대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단 과실범은 300만원 이하 벌금
제22조 제2항 제4호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2조 제2항 제5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청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제22조 제2항 제6호	사전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고의로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22조 제2항 제7호	원산지 증빙서류를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한 세관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산지 증빙서류 발급자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2조 제3항	협정 및 FTA 특례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발급한 자	

자료: FTA 특례법; 정재완, 『관세법』, 2014를 참고하여 연구자 수정

24) 제정 당시 법률의 정식명칭은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임

나. 특례법상 의무와 위반 시 처벌

1) 서류의 보관 및 제출

- FTA 특례법에서는 거래의 당사자인 수출입자 및 생산자는 특정 거래 관련 서류를 5년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간(협정에서 정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음(제12조)
 - 기산일은 수입자의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 수출자는 수출신고 수리일, 생산자는 원산지 증빙서류 작성일이 됨
 - 수입자는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 사본과 수입신고필증 등, 수출자는 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 증명서와 수출신고필증 등, 생산자는 물품의 원산지 증명을 위하여 작성·제공한 서류 등을 보관해야 함(제13조)
 - － 서류는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 자료전달매체에 보관할 수 있음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관한 심사에 필요 시 수입자, 수출자·생산자 등에 대해 원산지 증빙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이때, 수출자와 생산자는 계약상대국 거주자를 포함하며, 또한 물품의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 물품의 거래·유통·운송·보관·통관을 대행하거나 취급한자 모두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음
-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30일(한-페루 FTA 9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해야 함
 -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 기한 연장이 가능함

〈표 II-12〉 FTA 특례법상 거래당사자별 보관 서류

보관 주체	보관 서류 종류	
수입자	•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 포함) 사본 • 수입신고필증 • 수입거래 관련 약정서 • 지식재산권거래 관련 계약서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 수입물품의 국제운송 관련 서류 • 사전심사서 사본 및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사전심사서를 교부받은 경우)	
수출자	• 계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 포함) 사본,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전자문서 포함) 사본 • 수출신고필증 •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 생산자가 물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	• 물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관련 증빙서류 • 원가계산서 · 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 · 재고관리대장
생산자	• 수출자 또는 계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물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해 작성 · 제공한 서류 • 수출자와의 물품공급계약서 • 물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 재료생산자가 해당 재료의 원산지 증명을 위해 작성한 후 생산자에게 제공한 서류	

자료: FTA특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서류를 보관기간(5년) 동안 보관하지 않은 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22조 제2항의4)

○ 본 과태료 처벌에 있어 고의 과실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함

□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청한 서류 및 사전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 또는 고의로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비밀유지 원칙

□ 세관공무원과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 담당 직원은 수입자나 수출자, 생산자 등의 이해

관계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본 자료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켜야 함(제20조)

-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비밀 취급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22조 제1항)

3) 부정한 방법의 작성·발급 및 신청(제22조)

- FTA 및 FTA 관세특례법에 따른 원산지 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발급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22조 제2항)
- 협정 및 FTA 특례법에 따른 원산지 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발급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22조 제3항)

4) 양벌규정(제23조)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임직원,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위법행위를 하면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개인 또는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을 부과함
 - 법인 또는 개인이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양벌규정은 원산지 증빙서류를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발급받거나 작성·발급한 자 등, 원산지 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발급한 자 등에 적용됨²⁵⁾

25) FTA 특례법 제22조 제2항 및 제3항

5) 과태료(제24조)

- FTA 관세특례법을 위반하였을 시 위반 행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
 - 단, 과태료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FTA 관세특례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 혹은 현지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했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제24조 제1항)
 - 원산지 증빙서류의 오류 내용을 통보받고도 세관장에게 세액정정·보정신청, 수정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제24조 제2항)

〈표 II-13〉 FTA 특례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	위반사항	처벌
제24조 제1항 제1호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서류제출 기간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과태료 1천만원 이하
제24조 제1항 제2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자	
제24조 제2항 제1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한 협정관세 적용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한자	과태료 500만원 이하
제24조 제2항 제2호	용도세율을 적용한 협정관세 적용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자	
제24조 제2항 제3호	일시수입 면세물품을 해당 물품을 직접 수입한 경우에는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자	
제24조 제2항 제4호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내용을 통보받고도 이를 세관장에게 세액정정·세액보정신청·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한 자	

자료: 정재완, 『관세법』, 2014

Ⅲ. 주요국의 관세법상 벌칙 규정

1. 미국

가. 관세법 처벌 관련 법률 및 형법 총칙 배제규정

- ☐ 미국은 연방국가로서 연방의회가 제정한 연방법(Federal Statues)과 주의회가 각 주의 문제에 관해 제정한 주법(State Statues)이 따로 존재하고 있음
- ☐ 미국 연방법전(United States Code)은 51개의 장(Title)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제19장에서 관세(Customs Duties)에 관한 법령을 다루고 있음
- ☐ 관세법(Tariff Act of 1930)은 미국 연방법령의 제19장 중 Chapter 4에 편성되어있으며 수출입절차, 관세율, 무역촉진, 원산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제19장에 편성된 그 밖의 Chapter(관세법 포함 26개) 또한 FTA를 비롯한 무역협정, 밀수, 자유무역지역 등 무역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넓은 의미의 관세법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²⁶⁾
- ☐ 미국의 관세법은 6개의 절(Subtitle)로 제1202조부터 제1638조까지 총 25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관세율표에 대해 규정한 제1202조 다음에 수입물품과 용기의 표시에 대해 규정한 제 1304조로 연결되는 등 조문 숫자가 순서대로 연결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²⁷⁾

26) 법무법인 광장, 『관세형법의 개선방안』, 2009

27) 관세청, 『미국 관세법』 영한대역본(2010), pp. 12~13

- 미국의 연방 형법 및 형사 소송법(Crimes and Criminal Procedure)은 제18장에 편성되어 있으며 Chapter 27의 통관(Customs)에 관세법 위반에 대한 형사적 제재를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관세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미국 연방 형법 및 형사 소송법상의 형사절차에 따라 이루어짐
 - 관세법 위반에 대한 형법은 Chapter 27의 제541조에서 제555조 사이에 규정되어 있음
 - 미국은 형법 총칙 배제에 관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관세법에도 형사법의 규정 및 그에 관한 일반원칙이 적용됨
- 미국의 관세법에서는 관세법의 각종 절차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대한 민사적인 제재를 규정하고 있음

나. 관세 형벌의 형태

1) 배수형 벌금제 및 형의 병과

- 미국은 국경의 터널과 통로(18. U.S Code 555)를 제외한 모든 관세법에 대해 징역과 벌금의 병과를 규정하고 있음
- 미국은 죄의 경중 여부에 따라 벌금의 상한선이 정해지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일부 민사적 벌금(civil penalty)을 제외하고 배수형 벌금을 채택하지 않고 있음²⁸⁾
 - 경죄의 경우 개인과 법인에 따라 벌금이 차등되어 있으며 최소 5천달러 이하 최대 50만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28) 법무법인 광장, 『관세형법의 개선방안』, 2009

2) 양벌규정 및 특가법 존재 유무

- ☐ 일반적인 양벌규정이 없으며 법인이나 단체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음
 - 물품 밀수(18. U.S Code 546)에 있어서 미국의 법인이 밀수에 사용된 선박을 통제하고 있을 경우 그 법인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 한국과는 다르게 관세범죄에 대해 특별히 가중처벌하는 법이 존재하지 않음

3) 수출입 금지 물품의 객체

- ☐ 수출입금지 물품을 모두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음²⁹⁾
 - 관세법상 내용에는 공안 위해물품 혹은 음란한 물품의 미국 내 반입금지(19. U.S Code 1305),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반출입 금지 규정(19. U.S Code 1337)이 있음
 -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는 수출입 금지에 대한 내용은 화약물질의 국내반입 및 사용금지(18. U.S Code 836), 도난차량 등의 수입금지(18. U.S Code 511-512) 등이 있음
- ☐ 사이버 음란물의 밀수입에 대한 처벌 규정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4) 예비, 미수범, 교사범의 처벌

- ☐ 예비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형법에서 원칙적으로 예비죄를 처벌하지 않고 있음
- ☐ 미수범은 기수범과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하고 있음
 - 미국으로의 물품 밀수(18. U.S Code 545)에서 밀수입하려고 시도(attempt)하였거나 허위나 위조된 송장 등 서류로 세관을 통관하려고 시도한 자 모두 20년 이하의

29) 법무법인 광장, 『관세형법의 개선방안』, 2009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 미국은 교사범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도난된 자동차나 비고속도로의 모바일 장비, 선박, 항공기 등의 수입과 수출(18. U.S Code 553)에서는 법률에 위반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고의적으로 도와주거나 교사한 경우(knowingly aids or abets)도 기수범과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벌금 또는 양자를 병과하여 처벌하고 있음

5) 필요적 몰수(Forfeiture)

- ☐ 허위의 관세 환급 청구(18. U.S Code 550) 혹은 미국으로 밀수(18. U.S Code 545)의 경우 해당 물품 및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몰수해야만 한다고(shall be forfeited, 법적 의무)고 하여 필요적 몰수를 규정하고 있음
- ☐ 몰수는 허위의 관세 환급 청구를 비롯하여 불법적인 물품의 재반입(18. U.S Code 544), 보세창고 내 물품 제거 또는 재포장(18. U.S Code 548)에서 규정하고 있음

다. 미국 형법상 처벌 규정

1) 미국 연방 형법상 관세법 처벌 규정

- ☐ 18. U.S Code 541~555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세법 위반 관련 형벌은 대부분 징역형(imprisonment)과 벌금형(fine)이고 특히 벌금형의 범위는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Title 18에 규정된 벌금을 부과한다”고 함³⁰⁾
 - 벌금 액수는 18. U.S Code 3571에서 규정하고 있음
- ☐ 미국 연방 형법상 관세관련 범죄의 처벌은 징역형일 경우 최소 2년 이하에서 최대 20년 이하까지 부과되고 있음

30) 김성문(2012)

〈표 Ⅲ-1〉 미국 연방 형법상 관세관련 위반 내용 및 처벌

위반내용	처벌수준
18. U.S Code 541 허위 분류된 물품의 수입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또는 양자를 병과
18. U.S Code 542 허위 진술에 의한 물품의 통관	
18. U.S Code 543 정당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물품의 수입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또는 양자를 병과 공무원은 직위 해제
18. U.S Code 544 불법적인 물품의 재반입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또는 양자를 병과 해당물품은 몰수
18. U.S Code 545 ¹⁾ 미국으로의 물품 밀수	20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또는 양자를 병과 위반 물품, 물품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익은 몰수
18. U.S Code 546 외국으로의 물품 밀수 (외국법이 미국관세법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 몰수 시 미국 또한 밀수한자가 미국과 관련 있을 시 처벌하는 규정)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또는 양자를 병과
18. U.S Code 547 국경 사이에 위치한 건물에 상품을 보관하는 행위	
18. U.S Code 548 보세창고 안에서 물품의 제거 또는 재포장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또는 양자를 병과 물품은 몰수
18. U.S Code 549 세관이 점유 중인 물품의 불법반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또는 양자를 병과
18. U.S Code 550 허위의 관세 환급 청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또는 양자를 병과 관련된 물품이나 이익은 몰수
18. U.S Code 551 송장 등 기타 서류의 은닉 또는 파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또는 양자를 병과
18. U.S Code 552 외설적이거나 반역을 조장하는 서적이나 물품의 수입을 방조한 공무원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또는 양자를 병과
18. U.S Code 553 도난된 자동차나 비고속도로의 모바일 장비, 선박, 항공기 등의 수입과 수출	
18. U.S Code 554 ²⁾ 밀수출	
18. U.S Code 555 국경에 위치한 터널과 지하통로 건설 및 이용	

주: 1) 5년에서 20년으로 징역 기간을 개정(2006년)

2) 2년에서 10년으로 징역 기간을 개정(2006년)

자료: 『미국 관세법』, 2012; 김성문(2012) 참고하여 연구자가 수정

2) 미국 연방 형법 처벌 특징

- ☐ 18. U.S Code 541~555에 규정된 관세 관련 처벌 내용에는 미국 연방 형법의 처벌 구분 및 특징이 적용됨
- ☐ 미국 형법은 징역 1년 이상을 기준으로 중죄(Felony)와 경죄(Misdemeanor)로 나뉘지는 특징이 있음³¹⁾
- ☐ 중죄(Felony)는 법정 형량에 따라 class A부터 class E까지 5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단계별로 최소 1년 이상에서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징역형이 부과됨
- ☐ 중죄에 관해 벌금형이 부과되는 경우 개인은 25만달러 이상을 초과하여 부과될 수 없고 법인의 경우에는 50만달러를 초과하여 벌금을 부과할 수 없음³²⁾

〈표 Ⅲ-2〉 미국 형법상 중죄(Felony) 구분

단계	법정 형량
Class A	무기징역 또는 사형
Class B	25년 이상의 징역
Class C	10년 이상에서부터 25년 미만의 징역
Class D	5년 이상에서부터 10년 미만의 징역
Class E	5년 미만의 징역형

자료: 18. U.S Code 3559(a)(1)-(5)

- ☐ 경죄의 경우 개인과 법인에 대해 벌금의 차이가 있으며 벌금형일 경우 경죄의 종류에 따라 벌금액이 차등 적용됨

31) 김성문(2012)

32) 18. U.S Code 3571

〈표 Ⅲ-3〉 미국 형법상 경죄(Misdemeanor) 구분

단계	법정 형량	개인	법인
Class A	6개월 초과 1년 미만의 징역	사망의 결과에 이르지 않았을 경우 10만달러 이하의 벌금	사망의 결과에 이르지 않았을 경우 20만달러 이하의 벌금
Class B	30일 초과 6개월 이하 징역	사망의 결과에 이르지 않았을 경우 5천달러 이하의 벌금	사망의 결과에 이르지 않았을 경우 1만달러 이하의 벌금
Class C	5일 초과 30일 이하의 징역	사망의 결과에 이르지 않았을 경우 5천달러 이하의 벌금	사망의 결과에 이르지 않았을 경우 1만달러 이하의 벌금
기타 (경죄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25만달러 이하의 벌금	50만달러 이하의 벌금

자료: 18. U.S Code 3571(b)(4)-(6)

라. 미국 관세법상 처벌 규정

1) 미국 관세법상 처벌 규정

- 미국 관세법에서 형사적 제재 규정은 원산지 표시 훼손(19. U.S Code 1304(I)) 과 허위 적하목록 제출(19. U.S Code 1436(c))에서 각각의 조항 위반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 19. U.S Code 1304(I)에 따르면 원산지에 대한 정보 혹은 포함된 정보를 훼손, 파괴, 제거, 변조, 덧씌우기, 감추거나 지우는 자는 초범일 경우 10만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양자를 병과하고 재범이나 누진범의 경우 25만달러 이하의 벌금 혹은 1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 또는 양자를 병과함
 - 19. U.S Code 1436(c)에 따르면 선장, 차량 책임자 혹은 항공기 기장(조종사)가 위조, 변조(alter) 또는 잘못된 적하목록이나 문서, 정보를 세관에 제출한 경우 민사벌금 이외에 2천달러 미만의 벌금(fine)이나 1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 또는 양자를 병과함
 - － 만약 수송수단에 미국으로의 수입이 금지된 물품이 적재되었을 경우(선박의 경

우 항해에 필요한 물품 제외, 그 밖의 수송에 필요한 물품을 제외하고) 행위자(individual)에게 1만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 또는 양자를 병과함

2) 사기(Fraud), 중과실(Gross negligence), 과실(Negligence)의 구분처벌³³⁾

- ☐ 미국 관세법에서는 관세법 위반에 대한 민사적 처벌을 사기, 중과실, 과실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음³⁴⁾
- ☐ 사기에 의한 경우 상품의 국내 가격(Domestic value) 이하의 민사벌금(civil penalty)이 부과됨
- ☐ 중과실은 해당 물품의 국내 가격이나 관세, 세금, 수수료의 4배 중 더 적은 금액 이하의 민사벌금이 부과됨
 - 만약 위반 행위가 관세 부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경우 물품에 부과될 관세 100분의 40 이하의 민사벌금이 부과됨
 - 중과실의 경우 위반하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인지하고 있었거나 무모하게 이를 무시하여 인지하지 못한 경우 성립함
- ☐ 과실은 물품의 국내 가격이나 관세, 세금, 수수료의 2배 중 더 적은 금액 이하의 민사벌금이 부과됨
 - 만약 위반 행위가 관세부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경우 물품에 부과될 관세 100분의 20 이하의 민사벌금이 부과됨
 - 과실은 합리적인 주의(reasonal care)를 기울이지 못했을 경우 성립하게 됨

33) 19. U.S Code 1592

34) 19. U.S Code 1592

3) 자진신고에 대한 형의 경감

- 자진신고(prior disclosure)(19. U.S Code 1592 (C))에 따라 세관이 위반 행위에 대한 정식 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신고할 경우 민사벌금을 부과하지 않음
- 원산지 증명서를 잘못 작성하였지만 이 사실을 증명서를 제공한 모든 사람들에게 즉각적, 자발적으로 서면통지한 경우에는 민사벌금이 부과되지 않음
 - 또한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였지만 후에 상황 변화로 부정확한 정보가 되었으나 이를 즉각적이고 자발적으로 서면통보한 경우 위법 행위로 간주하지 않음

〈표 Ⅲ-4〉 19. U.S Code 1592에 따른 자수 처벌 유형

관련규정	처벌유형
	세관의 정식조사가 착수된 이후 위반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가 세관의 조사 착수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할 경우 위반한자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야할 책임을 짐
1592(c) (4)	사기(Fraud) 행위를 한 후 위반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 자진신고 시점이나 세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모두 지불했을 경우 납부해야 할 관세, 세금, 수수료의 100% 이하 벌금이 부과됨 단, 위반행위가 관세 부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경우 상품에 부과될 관세의 10%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1592(c) (5) NAFTA 자진신고 (6) 미·칠레 FTA 자진신고 (7) 미·싱가포르 FTA 자진신고 (8) 미·호주 FTA 자진신고 (9) 미·도미니카공화국· 중앙아메리카 FTA 자진신고 (10) 미·페루 FTA 자진신고 (11) 미·한국 FTA 자진신고 (12) 미·콜롬비아 FTA 자진신고 (13) 미·파나마 FTA 자진신고	중과실(gross negligence) 혹은 과실(negligence): 자진신고 시점이나 세관 통지일로부터 30일 내에 지불해야 할 관세, 세금,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관세의 이자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됨 수입자가 잘못된 특혜 원산지 신청을 했을지라도 이에 대한 자발적, 즉각적인 수정통보가 이루어진 후 지불해야할 관세를 납부할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음 (단, 싱가포르, 호주 FTA의 경우 오류수정 및 납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미국 재무부 장관이 그 기간을 정함)

자료: 미국 관세법 및 형법; 김성문(2012); 법무법인 광장, 『관세형법의 개선방안』, 2009; 19.U.S Code 1592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수정

마. 기타 FTA 관련 처벌

- 미국의 FTA 원산지 허위증명에 대한 처벌 또한 19. U.S Code 1592(c)의 사기, 중과실, 과실에 따르는 민사벌금이 부과됨
- 19. U.S Code 1592 (f)-(l)까지 각 FTA별 원산지 허위증명 시 처벌에 대해 다루고 있음
 - 잘못된 정보에 의해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자발적이고 즉각적으로 서면통지할 경우 민사벌금이 부과되지 않음
 - 증명 당시 올바른 정보였으나 후일 상황의 변화로 인해 부정확한 정보가 되었고 즉각적, 자발적으로 상황의 변화를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는 위법행위로 간주되지 않음
 - 위의 내용은 NAFTA(f), 칠레(g), 도미니카 공화국 · 중앙아메리카(h) 페루(i), 한국(j), 콜롬비아(k), 파나마(l)에 모두 적용됨
- 원산지 관련 서류 및 자료의 보관에 대한 처벌은 자료보관(19. U.S Code 1508(Record keeping)), 장부와 증거에 대한 심사(19. U.S Code 1509(Examination of books and witness))에서 규정하고 있음
 - 원산지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일정기간 동안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기록을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 민사벌금 1만달러 이하 또는 미 관세법에 따른 일반적인 자료 보관에 관한 민사벌금 중 더 큰 금액이 부과됨

〈표 Ⅲ-5〉 19. U.S Code 1508 원산지 보관에 따른 FTA별 처벌 유형

관련 규정	처벌 유형	보관기간
1508(e)	1) NAFTA에 의한 자료 미보관 - 민사벌금 1만달러 이하 또는 - 미 관세법에 따른 일반적인 자료 보관에 관한 벌금 이하 중 더 큰 금액	원산지 증명서 발급일 (issued date) 로부터 5년
	2) 미-캐나다 협정에 의한 자료 미보관 - 민사벌금 1만달러 이하	
1508 (f) 미-칠레 FTA (g) 미-도미니카공화국 · 중앙아메리카 FTA (h) 미-페루 FTA (i) 미-한국 FTA (j) 미-콜롬비아 FTA (k) 미-파나마 FTA	민사벌금 1만달러 이하 또는 미 관세법에 따른 일반적인 자료 보관에 관한 벌금 이하 중 더 큰 금액 (미-싱가포르 FTA는 해당 규정이 아직까지 없음)	

자료: 『한국 FTA 원산지 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2008); 미국 관세법 참고하여 연구자가 수정

- 19. U.S Code 1509 에 따라 통관의 정확성, 관세, 벌금 및 과태료 부과, 관세법 준수 등 조사를 위해 관세당국이 관련 자료와 정보를 요구하였을 시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민사벌금이 부과됨
- 민사벌금은 수입 건당(for each release of merchandise) 즉, 세관수입신고서류 사본당(copies of customs entry form) 부과됨
 - 제출 요청을 받은 정보를 고의(willful)로 유비, 보관 및 복구하지 않았을 경우 10만 달러 혹은 수입물품 평가 가격(appraised value of merchandise)의 75% 이하 중 적은 금액의 민사벌금이 부과됨
 - 과실(negligence)의 경우 1만달러 혹은 수입물품 평가가격의 40% 이하 중 적은 금액의 민사벌금이 부과됨
 - 다만 자연재해에 의한 정보 분실, 다른 증거에 따른 세관의 요구사항을 실질적으로 준수하였을 경우, 요구 서류가 수입 신고 시 세관에 제출되었을 경우 민사벌금이 부과되지 않음

〈표 Ⅲ-6〉 19. U.S Code 1509(g) 장부와 증거에 대한 심사에 따른 처벌

관련 규정	처벌 유형
1509(g) (2)(A)	고의적(willful)으로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를 유지(maintain), 보관(store), 또는 복구(retrieve)하지 않은 자 - 벌금은 수입건당으로 부과되고 10만달러 이하 또는 수입물품의 평가 가격의 75% 이하 중 적은 금액의 벌금 부과
1509(g) (2)(B)	과실(negligence)로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를 유지, 보관, 또는 복구 하지 않은 자 - 벌금은 수입건당으로 부과되고 1만달러 이하 또는 수입물품의 평가 가격의 40% 이하 중 적은 금액의 벌금 부과
1509(g) (3)(B) 벌금의 면제	(A) 불가항력(act of god) 또는 자연재해에 의해 제출을 요청받은 정보를 분실한 경우 (B) 다른 증거에 의해 세관의 요구사항을 실질적으로 준수한 경우 (C) 요구서류가 수입신고 시 세관에 제출되어 보존되어 있는 경우

자료: 『한국 FTA 원산지 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2008); 미국 관세법 참고하여 연구자가 수정

□ 미국은 자료보관 인증제도(record-keeping compliance program)를 도입하고 있으며 인증 요건을 만족한 자료보관 인증기업(record keeper)이 요청을 받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고의적 혹은 반복적인 위반이 아닌 경우 위법사실에 대한 서면통보가 이루어짐

○ 인증기업이 반복적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벌금이 부과되며 인증이 취소됨

〈표 Ⅲ-7〉 19. U.S Code 1509(f)에 따른 자료보관 인증제도의 인증 요건

관련규정	인증 요건
19. U.S Code 1509(f)	(A) 자료보관에 대한 법적 요구사항 숙지 (B) 자료를 준비, 유지, 생산해야 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에 대한 교육절차 (C) 세관에 증명하기 위한 자료의 준비, 유지 및 생산에 관한 절차 (D) 자료보관 준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자 지정 (E) 세관의 승인을 받은 원본 및 사본 보관 절차 (F) 규정 위반 시 세관에 통보하기 위한 절차

자료: 『한국 FTA 원산지 규정의 특성 및 활용 전략』(2008)

2. 일본

가. 관세법 처벌 관련 법률 및 형법 총칙 배제규정

- 일본의 관세법령은 관세법과 관세정률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세 범죄에 대한 형벌은 관세법 내에 규정하고 있음
 - 일본 관세법 제10장 벌칙(제108조의4 내지 제118조)에 관세 형벌 내용이 구성되어 있음
- 일본 관세법은 형법 총칙 배제규정을 두지 않으므로 형법 총칙이 관세범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일본은 형법 총칙 배제규정을 일시적으로 두고 있다가 1960년대에 전부 삭제함³⁵⁾
- 일본에는 관세법을 가중처벌하는 별도의 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나, 관세 벌칙 조항 내에 범죄 관련 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벌금 액수를 높여 부과하는 경우는 있음
 - 예: 관세포탈죄 처벌은 본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양자 병과 → 포탈 금액의 10배가 500만엔을 넘는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벌금은 500만엔을 초과하고 포탈·환급받은 관세액의 10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할 수 있음

나. 관세 형벌의 형태

1) 확정형 벌금제 및 형의 병과

- 일본의 관세 형벌은 원칙적으로 배수형 벌금제가 아닌 '확정벌금형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다만 예외적으로 관세포탈죄 등과 관련하여 배수형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³⁶⁾

35) 법무법인 광장, 『관세형법의 개선방안』, 2009

36) 법무법인 광장, 『관세형법의 개선방안』, 2009

- 단, 관세포탈죄(제110조)와 밀수품 취득죄(제112조)에 있어서는 범죄 관련 금액이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배수형 벌금제를 규정하고 있음

-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규정은 일본의 관세법 내 다수의 처벌 규정에 규정되어 있음

2) 양벌규정

- 일본은 관세법 제117조에 양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벌금형만을 부과한다는 점이 특징임
-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등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대해 금지품수출입죄, 조세포탈죄, 밀수품 취득죄 등의 위반 행위의 처벌 시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 해당 각 조의 벌금형을 부과함³⁷⁾
 - 인격 없는 사단 등(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해진 것)은 법인으로 간주함

3) 예비, 미수범 등의 처벌

- 일본 관세법에서는 범죄 행위별로 예비·미수범에 대한 형량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교사자나 방조범에 대한 규정은 없음
 - 따라서 교사와 방조 행위에 대한 규정은 일본 형법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 － 일본 형법 제61조에서는 사람을 교사하여 범죄를 실행하게 한 자는 정범의 형을 과하며, 교사자를 교사한 자도 마찬가지로 임을 규정함
 - － 동법 제62조에서는 정범을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하며, 종범을 교사한 자에게는 종범의 형을 과함을 규정함

37) 관세법 제117조 제1항

- 일본의 관세법에서는 예비범에 대해서도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범에 비해 낮은 형벌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관세포탈죄의 정범에 있어서는 기수범에 준하는 처벌을 하고 있음
- 미수범에 대해서는 주요 관세법 위반 행위, 즉 수출입금지 물품의 수출입 행위와 관세의 포탈죄, 무허가 수출입죄에 대해 기수범과 동일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다. 관세법상 처벌 규정

1) 수출금지 물품의 수출(제108조의4)

- 일본의 수출금지 화물은 일본 관세법 제69조의2(수출금지 화물)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대상 물품은 마약, 아동 음란물,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 부정경쟁방지법상 특정 행위³⁸⁾를 조성하는 물품임
- 관세법 제108조의 4에서는 수출금지 화물의 수출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 수출금지 화물 중 마약을 수출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함
 - 수출금지 물품 중 아동포르노, 특허권 등 침해물품, 부정경쟁방지법상 특정 행위 조성 물품을 수출하는 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함

38)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1. 타인의 상품 등 표시(개인의 업무에 관한 성명, 상호, 상표, 포장, 상품의 용기 혹은 포장 등 상품 또는 영업을 표시하는 것을 말함. 이하 같음)로써 수요자들 사이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 것과 동일 혹은 유사한 상품 등 표시를 사용하거나 그 상품 등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양도 혹은 인도하고, 양도 혹은 인도를 위해 전시, 수출, 수입하거나 전기통신회로를 통하여 제공하여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2. 자기의 상품 등 표시로써 타인의 저명한 상품 등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그 상품 등의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양도 혹은 인도하고, 양도 혹은 인도를 위해 전시, 수출, 수입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
3. 타인의 상품의 형태(해당 상품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결한 형태를 제외)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 혹은 대여하고, 양도 혹은 대여를 위해 전시,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 수출금지 물품의 수출의 실행에 착수하여 이를 끝마치지 못한 미수범에 대해서도 수출한 것과 동일하게 처벌하며, 예비자에 대해서는 정해진 형을 부과함
 - 마약 수출을 예비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함
 - 마약 외 수출금지 물품 수출을 예비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함

2) 수입금지 물품의 수입(제109조)

- 수입금지 물품은 일본 관세법 제69조의11(수입금지화물) 제1항 1 내지 10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대상은 수출금지 물품을 포함하여 그 외에 총기류, 폭발물, 화약류, 위조화폐, 풍속을 해하는 서적·도화·조각물 등임
- 수입금지 물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제109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수입금지 물품 중 마약, 총기, 폭발물, 화약류, 화약병기 금지 및 특정 물질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 물질, 위조화폐 등³⁹⁾을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함
 - 미수범은 기수범과 동일하게 처벌하며, 예비를 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함
- 풍속을 해하는 서적·도화·조각물, 아동포르노,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부정경쟁방지법상 특정 행위 조성 물품⁴⁰⁾을 수입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7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함
 - 미수범에 대해서는 기수범에 준하여 동일하게 처벌하며, 예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함

39) 관세법 제69조의11(수입금지화물)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

40) 관세법 제69조의11(수입금지화물)제1항 제7호 내지 제10호

3) 관세포탈죄(제110조)

- ☐ 관세법 제110조에서는 위조 등의 부정행위로 관세를 면하거나 환급을 받은 자,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화물에 대해 위조 등의 부정행위로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수입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양자를 병과함
- ☐ 본 위반행위에 있어 통관업자의 위조 등 부정행위로 관세를 면하거나 환급받은 경우에는 통관업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처벌을 하고 있음
- ☐ 관세포탈의 예비를 한 자 또는 미수범에 대하여는 모두 기수범과 동일하게 처벌함
- ☐ 관세포탈 금액의 10배가 500만엔을 넘는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벌금은 500만엔을 초과하고, 포탈 · 환급받은 관세액의 10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할 수 있음

4) 무허가 수출입(제111조)

- ☐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화물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입한 자와, 신고 또는 검사에 있어 위조한 신고 혹은 증명을 하거나 위조서류를 제출하여 화물을 수출입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함
- ☐ 통관업자가 위조한 신고 · 증명 또는 위조한 서류제출에 의해 화물을 수출입한 경우에는 통관업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처벌을 함
- ☐ 미수범에 대해서 기수와 동일한 처벌을 하며, 예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함
 - 중대한 과실로 무허가 수출입을 한 자에게는 벌금형이 부과됨⁴¹⁾

41) 관세법 제116조

5) 밀수품 취득죄(제112조)

- 관세법 제112조에서는 밀수품의 취득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출입금지화물 등 범죄와 관련된 화물에 대해 이를 알고 운반, 보관 또는 유상·무상으로 취득하거나 처분의 매개·알선을 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함
- 밀수품 취득과 관련된 관세 또는 관세 환급액의 5배가 300만엔을 넘는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벌금은 300만엔을 초과하고 그 관세 또는 관세 환급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할 수 있음

〈표 Ⅲ-8〉 일본 관세법상 주요 위반행위 처벌

조항	위반 행위	처벌 내용	비고
제108조의4	제1항. 수출금지물품 중 마약의 수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	- 미수: 기수처벌 - 예비: 감경처벌
	제2항. 수출금지물품 중 마약을 제외한 물품 (아동포르노 등)의 수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	
제109조	제1항. 수입금지물품 중 마약, 폭발물, 위조 지폐 등의 수입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	
	제2항. 수입금지물품 중 음란물 등을 수입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	
제110조	관세포탈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	- 가중처벌조항 ○ - 예비: 기수처벌 - 미수: 기수처벌
제111조	무허가 수출입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	- 중대 과실 인정 - 미수: 기수처벌 - 예비: 감경처벌
제112조	밀수 ¹⁾ 품 취득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	- 가중처벌조항 ○

주: 1) 금지품 수출입 행위를 밀수로 보고 있음

자료: 일본 관세법

6) 몰수와 추징(제118조)

- 일본의 관세법상 몰수와 추징은 필요적 몰수·추징임⁴²⁾
- 수출입금지 화물 중 특정 물품을 수출입하는 경우 몰수하여 폐기할 수 있으며, 수입의 경우 수입하려는 자에게 환적을 명할 수 있음
 - 몰수 대상 수출금지 화물은 마약,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부정경쟁방지법상 특정행위 조성 물품⁴³⁾임
 - 몰수 대상이 되는 수입금지 물품은 마약, 총기, 폭발물, 화약류, 화약병기 금지 및 특정 물질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 물질, 위조화폐,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부정경쟁방지법상 특정 행위 조성 물품⁴⁴⁾임
- 관세법상 범죄행위와 관련된 화물과 그러한 범죄행위용으로 제공한 선박 또는 항공기 또는 밀수화물 운반(제112조)의 관련된 화물을 몰수함
 - 몰수의 대상 행위는 수출입금지 화물의 수출입죄(제108조의4 및 제109조), 수입금지화물을 보세지역에 보관하는 등의 죄(제109조의 2), 관세포탈죄(제110조), 무허가 수출입죄(제111조)임
- 몰수하여야 하는 범죄화물(선박, 항공기 제외)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범죄가 이루어진 때의 몰수할 수 없는 물품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함
 - 범죄화물 또는 운반기구의 몰수 또는 범죄화물의 몰수를 대신하는 추징이 이루어진 때에는 본 범죄화물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42) 법무법인 광장, 『관세형법의 개선방안』, 2009

43) 관세법 제6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44) 관세법 제69조의11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 제9호, 제10호

라. 기타 FTA 관련 처벌

- 현재 일본은 13개 국가(또는 연합)과 경제연계협정(EPA⁴⁵⁾)을 맺고 있음
 - 체약 상대국은 싱가포르(2002.11 발효), 멕시코(2005.04), 말레이시아(2006.07), 칠레(2007.09), 태국(2007.11), 인도네시아(2008.07), 브루나이(2008.07), ASEAN(2008.12), 스위스(2008.12), 필리핀(2009.09), 베트남(2009.10), 인도(2011.08), 페루(2012.03)임
- 일본은 우리나라의 FTA 특례법과 같이, 관세법과 별도로 경제연계협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별도의 법률은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다만, 관세법 제68조(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시의 제출서류)와 관련하여 EPA 세율 적용 시 세관 제출 서류인 원산지 증명서의 작성 및 제출 요건 등에 대해 관세법 시행령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FTA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도 형법의 총칙에 따르며 관세법상의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파악됨

3. 독일

- EU의 회원국들은 EU 의회가 정한 관세법을 지키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동 관세법(Community Customs Code)인 Council Regulation (EEC) No 2913/92와 관세법의 시행 규정인 Commission Regulation (EEC) No 2454/93을 준수함
- EU 공동관세법에서는 공동관세 부과에 필요한 공동관세율, 원산지규정 및 일반 통관 절차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이나 제재 조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회원국의 관할 관세청에서 회원국별 법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⁴⁶⁾

45)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따라서 EU 회원국에서 관세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각 국가 개별법을 따라야 하며, 이하에서는 독일의 조세관련법 및 형법 규정의 조사를 통해 관세법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함

가. 관세법 처벌 관련 법률 및 형법 총칙 배제규정

- 독일은 기본적으로 EU의 공동관세법을 따르며, 독일 내 개별법으로는 관세행정법(Zollverwaltungsgesetz; Zoll), 조세기본법(Abgabenordnung; AO) 등이 존재함
 - 기타 관련 규정으로는 대외 무역 및 대금지급법(Foreign Trade and Payments Act) 및 그 조례(ordinance)가 있음
- 독일은 조세에 관한 통칙법인 조세기본법에서 조세와 관세를 아우르는 처벌 관련 규정(Part 8. criminal and administrative fines, penalties and fines process)을 두고 있음
 - 조세 관련 범죄에 관한 벌칙 규정 : 조세기본법 제369조 내지 제376조
 - 조세 관련 질서위반행위에 관한 규정 : 동법 제377조 내지 제384조
 - 조세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절차 : 동법 제385조 내지 제409조
- 독일의 조세기본법은 조세범죄와 관세범죄를 구별하지 않으면서 조세포탈죄, 영업적·집단적 조세포탈죄, 금지품수출입죄, 영업적·폭력적·집단적 밀수죄, 조세장물법을 두고 있음⁴⁷⁾
- 조세(관세)징수를 위태롭게 하는 그 밖의 위반행위는 조세(관세)질서위반범으로 정의하고 모두 질서 위반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⁴⁸⁾, 조세관련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절차는 질서위반법(Ordnungswidrigkeiten; OWiG)의 규정을 따름⁴⁹⁾

46) 김한성·조미진·정재완·김민성,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12

47) 윤동호, 「관세법의 벌칙규정의 체계화방안 연구」, 2013.4

48) 윤동호, 「관세법의 벌칙규정의 체계화방안 연구」, 2013.4

49) 조세기본법 377(2)

- 독일 조세기본법은 형법 총칙 배제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조세기본법 제369조 2항⁵⁰⁾에 의해, 조세범죄에 대해 조세법률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형법(Strafgesetzbuch; StGB)의 일반 규정이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음

나. 관세 형벌의 형태

1) 일수벌금제도

- 독일의 형법 제40조에 따라 독일은 벌금형에 관해 ‘일수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관세 범죄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 일수벌금기간은 5일부터 360일까지이며, 그 일수벌금액은 범죄자의 개인적인 경제사정(보통은 세금을 공제한 순수입)을 고려하여 평균적으로 범죄자가 하루에 보유할 수 있는 금액으로 최소 1유로에서 최고 5만유로 사이에서 결정함⁵¹⁾
 - 결정된 기간과 일수벌금액을 곱한 금액이 범죄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이 되며, 따라서 벌금형의 형량범위는 최소 5유로에서 최대 1,800만유로임

2) 조세포탈법의 자수(Voluntary disclosure)⁵²⁾

- 조세기본법 제371조에서는 제370조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조세포탈범이 당국에 제공했던 정보를 수정하거나 부정확·불완전한 정보에 대한 보충, 누락되었던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처벌을 면제할 수 있음
 - 단, 자수 전에 조세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심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을 안 경우 등에는 처벌 면제가 적용되지 않음

50) 조세기본법 369(2) Tax crimes shall be subject to the general provisions of criminal law unless otherwise provided for by the tax laws' provisions on crime.

51) 한국법제연구원, 『독일 조세기본법상 처벌 규정』, 2007

52) 조세기본법 371(1)

2) 형의 병과 규정

- 독일은 관세범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필요적 병과뿐만 아니라 임의적 병과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음
- 다만, 조세포탈죄, 금지위반죄, 조세은닉죄 등을 범한 경우 법원은 1년 이상의 징역형 이외에 공직에 대한 자격 및 공직선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⁵³⁾

3) 예비, 미수범 등의 처벌

- 조세범기본법에서 조세포탈죄(제370조 제2항)와 조세은닉죄(제374조 제3항)에 한해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는데, 해당 법조문에는 “미수는 처벌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수범은 형법 총칙 규정에 따라 형의 감경이 가능한 것으로 봄⁵⁴⁾
 - 독일의 형법에서는 미수범에 대해 2nd Title 22조(section 22)부터 규정되어 있는 바, 미수범을 처벌함에 있어서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것보다는 관대하게 처벌할 수 있음⁵⁵⁾을 명시하고 있음
 - 전적인 무지(gross ignorance)로 인한 위반 행위인 경우에는 범죄자를 석방하거나 형을 경감하는 규정⁵⁶⁾을 둠
- 조세범기본법상에서는 방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으나, 제369조에서 방조 행위 역시 관세범죄 행위에 포함하며, 이를 처벌함을 알 수 있음
 - 반면, 형법에서는 교사(abet)자에 대해서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하며⁵⁷⁾, 범죄에 도움(aid)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정범의 처벌을 기본으로 하되 형이 감경될 수 있

53) 조세기본법 제375조 제1항

54) 법무법인 광장, 『관세형법의 개선방안』, 2009

55) Criminal Code section23(2)

56) Criminal Code section23(3)

57) Criminal Code section26

음⁵⁸⁾을 규정함

- 독일은 조세범기본법에서 예비죄를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고 있으며, 예비를 기수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관세포탈죄 등의 예비는 불가벌임⁵⁹⁾

4) 가중 또는 감경 처벌

- 조세기본법 벌칙 규정 내에 특정한 경우에 한해, 기본 범죄에 비하여 가중하여 처벌하거나 형을 감경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독일은 관세범죄를 특별히 가중하여 처벌하는 별도의 법령은 존재하지 않음
- 조세기본법 제370조(조세포탈행위)에는 중한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이 있음
 - 본래 조세포탈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나, 고의로 대규모의 세금을 축소 신고하여 부당한 금전적 이득을 얻는 등 중한 범죄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의 경우에는 6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음(제370조 제3항)
- 반면, 제373조(영업적 · 폭력적 · 집단적 밀수죄) 및 제374조(세금포탈 물품의 수취, 보관, 판매)에는 가벼운 범죄에 대한 형의 감경 규정이 있음
 - 물품을 불법으로 수출입 한 자 또는 수출입 관세를 포탈한 자는 6개월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나, 다만 죄가 가벼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함(제373조 제1항)
 - 위반자가 전문적이거나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 계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6개월 내지 10년의 징역에 처함. 죄가 경미한 경우 처벌은 징역 최고 5년 또는 벌금을 부과함(제374조 제2항)

58) Criminal Code section 27

59) 법무법인 광장, 『관세형법의 개선방안』, 2009

다. 조세기본법상 처벌 규정

- 조세기본법 제369조에서는 조세범죄(관세범죄) 4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① 조세법(tax law)하에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 ② 불법적인 수출입 및 물품 운반, ③ 수입인지(revenue stamp) 위조 또는 이의 준비 행위, ④ ①내지 ③의 범행을 방조하는 행위가 범죄에 해당됨을 규정하고 있음
- 기타 대표적인 범죄 행위로 관세포탈죄, 금지품 수출입죄, 영업적 · 폭력적 · 집단적 밀수죄, 조세은닉죄 등을 조세기본법에서 조항별로 규정하고 있음

1) 관세포탈죄(제370조)

- 제370조 조세 포탈(tax evasion) 규정에서는 세금과 관련하여 본질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 당국에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 3가지 행위를 통해 세금을 축소하여 부당한 금전적 이득을 얻어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monetary fine)이 부과됨을 규정함⁶⁰⁾
 - 3가지 행위는 ① 세금과 관련하여 본질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 당국에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정보 제공, ② 본질적으로 중요한 사실에 대해 세관당국에 통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③ 수입인지(revenue stamp) 또는 수입인지 기계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은 행위임
 - 조세포탈죄에 있어서는 미수범도 처벌함
- 중한 범죄의 경우에는 6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한 범죄란 고의로 대규모의 세금을 축소 신고하여 부당한 금전적 이득을 얻은 경우 등 5가지 사유임⁶¹⁾
 - 기타 가중처벌되는 중한 범죄는 다음과 같은 경우임

60) 조세기본법 370(1)

61) 조세기본법 370(3)

- 권한과 직위를 남용한 공무원
- 권한과 직위를 남용한 공무원에게 도움을 청하는 행위
- 서류를 위조하여 반복적으로 세금을 축소신고, 부당이득을 얻는 행위
- 세금 포탈을 목적으로 구성된 집단의 일원으로 부가가치세 또는 소비세(excise tax)를 축소신고하여 이득을 얻는 행위

□ 과실로 인한 세금의 축소 신고는 질서 위반 행위로 보며 최대 5만유로 이하의 벌금(monetary fine)에 처할 수 있음⁶²⁾

- 당해 행위를 범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당해 행위에 관한 형벌 절차 또는 과태료 절차의 개시 통지가 있기까지 당해 행위를 범한 자가 세무관청에 대하여 기존의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했던 진술을 정정·보완하는 경우 또는 없었던 진술을 추가로 행한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⁶³⁾

2) 금지품 수출입죄(제372조)

□ 금지품을 수입, 수출 또는 운반한 자는 금지품 수출입 위반에 대한 처벌과 벌금이 다른 규정에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 제370조(1) 및 (2)에 따라 처벌함

□ 즉, 금지품 수출입죄에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monetary fine)이 부과되며, 미수범도 처벌함

3) 영업적·폭력적·집단적 밀수죄(제373조)⁶⁴⁾

□ 특별히 전문적으로 수출입 관련 조세를 포탈하거나 전매규정에 대한 위반행위를 전문적으로 수행한 자는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62) 조세기본법 제378조

63) 김유찬·이유향, 『주요국의 조세제도: 독일편』, 2009

64) 김유찬·이유향, 『주요국의 조세제도: 독일편』, 2009

○ 다만, 죄가 가벼운 경우(in less serious cases),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monetary fine)에 처함⁶⁵⁾

□ 다음에 규정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함

- 본인 또는 관계인이 무기를 휴대하고 수출입 관련 조세를 포탈 또는 수출입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
- 타인의 저항을 폭력 또는 폭력의 위협으로 방해하거나 제압하기 위하여 본인 또는 관계인이 무기나 기타 도구 또는 기구를 휴대하고 수출입 관련 조세를 포탈 또는 수출금지조항을 위반한 자
- 수출입 관련 조세의 포탈 또는 수출금지조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하기 위하여 결성한 단체의 일원으로서 다른 일원의 협력을 얻어 당해 범죄를 행한 자

□ 본 죄와 관련하여서는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음

4) 조세은닉죄(조세장물범)(제374조)

□ 조세 포탈과 관련된 물품을 획득하거나, 팔거나, 다른 사람을 도와 파는 경우 등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monetary fine)에 처함

□ 이러한 범죄 행위를 위해 결정한 단체의 일원이 반복적으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됨

○ 죄가 가벼운 경우(in less serious cases),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monetary fine)에 처함⁶⁶⁾

□ 조세은닉죄와 관련하여서는 미수범도 처벌함

65) 조세기본법 제373조

66) 조세기본법 제373조

5) 조세(관세)질서위반⁶⁷⁾

- 조세질서위반(관세질서위반)이란 조세법에 의하여 과태료(Geldbusse)를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를 말함(제377조제1항)
 - 조세질서위반에 대해서는 조세법의 과태료 규정에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질서위반에 관한 법률의 제1편의 규정을 적용함
- 과실로 인한 세금의 축소 신고는 질서위반 행위로 보며 최대 5만유로 이하의 벌금(monetary fine)에 처할 수 있음(제378조)
-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행위를 통하여 조세를 탈루하거나 부당한 조세상의 이익을 획득한 자는 질서위반을 범한 것이며, 5천유로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제379조)
 - 사실이 아닌 증빙자료를 발행하는 행위
 - 법률상 기장 또는 기록의무가 있는 거래 사실 또는 사업 운영내용을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장하거나 이를 시킨 행위
- 다음 각 호에 규정한 사항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한 자는 조세질서위반을 범한 것으로 하며, 본 규정의 조세질서위반에 대해서는 5천유로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제381조)
 - 과세의 준비, 확보 또는 사후검사를 위하여 부과된 의무
 - 소비세 과세대상인 생산물 또는 당해 생산물을 포함한 물품의 포장 및 표시, 당해 생산물 또는 물품에 대한 운송 제한 또는 사용 제한
 - 비과세된 물품의 보세구역 내 소비
- 수출입 관련 조세납부의무자로서 또는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규정한 사항에 적용되는 관세법, 이와 관련된 법규명령, 유럽공동체의 이사회 또는 위원회의 명령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는 자는 조세질서위반범이며 이러한 조세질서위반에 대

67) 김유찬 · 이유향, 『주요국의 조세제도: 독일편』, 2009

해서는 5천유로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제382조 제1항)

- 유럽공동체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운송에 대한 관세당국의 확인
- 세관절차로의 상품의 인도 및 실행, 그리고 기타 관세법이 규정하는 절차
- 관세자유지역, 관세국경지구 또는 국경감시대상지역

6) 몰수

- 조세기본법 제375조 제2항에 따라 조세포탈죄, 금지위반죄, 영업적·폭력적·집단적 밀수죄, 조세은닉죄가 범하여진 경우에는 범죄관련 물품, 운송수단 등을 몰수할 수 있음을 규정함⁶⁸⁾
- “몰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기본법상의 몰수는 임의적 몰수임

〈표 Ⅲ-9〉 독일 조세기본법상 관세 관련 위반행위와 처벌 규정

조항	위반 행위	처벌	가중 또는 감경처벌
제370조	조세포탈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가중 처벌 6개월 내지 10년 이하의 징역
제372조	금지품 수출입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
제373조	영업적·폭력 적·집단적 밀수죄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감경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제374조	조세은닉죄 (조세장물범)	5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	
제377조	질서위반범	최대 5만유로 이하의 과태료	—

자료: 윤동호, 「관세법의 별칙규정의 체계화방안 연구」; 독일 조세기본법을 참고하여 연구자 작성

라. 기타 FTA 관련 처벌

- 독일이 EU의 회원국으로서 가입된 무역협정은 한-EU FTA, EU-칠레 AA⁶⁹⁾, EU-크로

68) 법무법인 광장, 『관세형법의 개선방안』, 2009

69) 연합협정(Association Agreement)

아티아 SAA⁷⁰⁾, EU-터키 CU⁷¹⁾, EU-페로제도 FTA 등을 포함해 모두 26개임⁷²⁾

○ EU는 다양한 국가와 FTA 이외에도 AA(연합협정) 또는 SAA(안정 및 연합협정) 등 다양한 형태로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음

- 독일은 FTA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규정이나 관세 관련법상에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우선적으로 각 협정문을 준수하며, 조세기본법 및 질서위반법, 관세행정법 등의 규정을 근거로 FTA 관련 위반 행위를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캐나다

가. 관세법 처벌 관련 법률 및 형법 총칙 배제규정

- 캐나다의 관세 법령은 통관 및 원산지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관세법, 관세율 규정을 위한 관세율법(Customs Tariff Act), 분쟁, 상계 및 긴급관세, 관세 납부 등에 대한 특별규정을 담고 있는 특별수입조치법(Special Import Measures Act), 이민국법(Canada Boarder Agency Act) 등이 있음⁷³⁾

○ 관세율법 집행을 위한 세부 규정으로 임시수입(Temporary importation regulations), 수입품 표시(Marking of imported goods regulations) 등이 있음

- 이 법들의 규정(regulation)을 위반하였을 경우 AMPS(Administrative Monetary Penalty System)에 따라 민사벌금(civil penalty)이 부과됨

- AMPS하에서 수입자, 수출자, 중개인 등이 관세법 및 관련법을 위반하였다면 세관은

70) 안정 및 연합협정(Stabiliz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71) 관세 동맹(Customs Union)

72) www.fta.go.kr, 2014년 6월 24일 기준임

73) 김한성·조미진·정재완·김민성,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12

일정 형식에 따라 벌금부과 통보(NPA, Notice of Penalty Assessment)를 함⁷⁴⁾

- 관세법, 관세율표, 기타 이와 관련 규정의 위반이나 라이선싱 협정 및 합의관련 조건의 위반 등에 적용됨
 - 벌금의 액수는 위법 유형, 빈도, 중요성에 따라 결정되고 단일 위법 행위에 대해 최고 2만 5천캐나다달러까지 부과할 수 있음
 - 위법 행위가 반복될수록 벌금은 증가하며 벌금은 물품 관세의 특정 퍼센트나 정해진 금액 또는 더 높은 금액으로 부과됨
 - 벌금이 부과될 때마다 클라이언트 위반기록문서(client contravention history)에 기재되어 세관에 의해 집중관리 대상이 됨
- ☐ 벌금 외에 이자도 발생하며 서면으로 통지 후 벌금 지불이 완료되는 날까지 계산되어 부가됨
- 서면 통지 후 30일 이내 벌금을 지불할 경우에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 캐나다는 한국과 다르게 형법 배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형법의 규정이 관세 범죄에도 일반적으로 적용됨
- ☐ 캐나다에는 관세범죄를 특별히 가중하여 처벌하는 별도의 법령이 존재하지 않음

나. 관세 형벌의 형태

1) 배수형 벌금제 및 형의 병과

- ☐ AMPS에서 위험군에 분류된 그룹의 경우 위험 단계가 한 단계 증가할 때마다 벌금규모가 두 배로 늘어난다고 규정하여 배수형 벌금제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관세법 및 특별수입조치법상에는 배수형 벌금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음

74) 조미진, 『주요국의 통관제도: 캐나다편』, 한국조세연구원, 2013

- ☐ 캐나다는 관세법 제160조⁷⁵⁾, 제160.1조⁷⁶⁾ 제161조⁷⁷⁾ 모두 징역과 벌금 양자를 병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특별 수입조치법에는 벌금만 규정하고 있음

2) 양벌규정 및 예비, 미수범의 처벌

- ☐ 캐나다의 관세법에서는 별도의 양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 캐나다는 예비범, 미수 및 교사자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임
- 단, 관세법 제9조(4)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관세사 또는 관세사로 등록된 것처럼 거래를 하거나 거래를 시도하는 행위를 비롯하여 제153조(1) 관세회피, 제153.1조 공무원 업무방해, 제159조 밀수행위에 대해서는 시도해서는 안 된다고(do not attempt) 규정함

3) 압수(Seizure) 및 몰수(Forfeiture)

- ☐ 관세법 제110조에서는 관세청 직원(officer)이 합리적인 이유로(reasonable grounds) 법 또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다면 물품을 징벌로써 몰수에 갈음하여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may seize as forfeit)
- 그 위반행위가 발생한 시점이든 또는 그 이후에, 그 관세청 직원이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어떠한 수송(수단)이 그 상품과 관련하여 이용되었다고 믿는 경우, 관세청 직원은 징벌로써 그 수송수단을 압수할 수 있음
- ☐ 어떠한 수송수단 또는 물품이 몰수에 갈음하여 압수 되었을 때 관세법 제113조에 따라 물품이 압수된 때로부터, 운송수단이 이용된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within the time period) 몰수해야 함(are forfeited)

75) 일반적인 위반과 처벌, General Offence and Punishment

76) 공무원 방해죄에 대한 처벌, Penalty for hindering an officer

77) 약식기소와 처벌, Summary Conviction and Punishment)

○ 관세법 제113조에서는 그 어떤 압수도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 또는 압수 통지 후 6년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캐나다의 경우 몰수에 대하여 몰수한다고(are forfeited) 명시하여 필요적 몰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압수의 대해서는 압수할 수 있다고(may seize)하여 임의적 압수를 규정하고 있음

4) 수출입금지 물품의 객체

□ 수입금지 품목은 관세율법 제5부 금지품목(Prohibited goods)에 규정되어 있고 상세한 정보는 D9(Prohibited importations)⁷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수출입 허가법(Export and Import Permit Act)에 수출입 허가 취득 품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⁷⁹⁾

○ 중고비행기, 죄수가 제조한 상품, 중고 매트리스 관련재료, 잘못된 원산지정보 기재 품목 및 상표권법상 수입이 금지된 품목, 중고자동차 등이 있으며 비교적 규정 범위가 한국보다 넓음

□ 그 밖에 특정 저작권물은 저작권법에서 별도 금지 품목 리스트를 규정하고 있으며 위조화폐는 형법 제448조에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음

□ 캐나다는 사이버 밀수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나 형법 제168조(3)에서 음란물(출판, 음성 녹음, 동영상 물품 등)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음

다. 관세법상 처벌 규정

□ 캐나다 관세법 제153조부터 제163조까지 금지, 위반 그리고 처벌(Prohibitions, Offences and Punishment)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 위반과 관련한 처벌은 관

78) 캐나다는 D-memoranda에 각종 세부 규정 및 조항들에 대해 정리하고 있음

79) 조미진, 『주요국의 통관제도: 캐나다편』, 한국조세연구원, 2013

세법 제160조 일반적인 위반과 처벌(General offence and punishment)에서 규정함

- 관세법 제160조에서는 수출입 물품의 보고, 거짓진술 등의 내용에 대해 별도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약식기소에 따라 처벌해야 할 경우 5만캐나다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를 병과한다고 규정함
 - 기소범죄에 의해 처벌해야 할 경우 50만캐나다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를 병과한다고 규정함
- 공무원 업무방해죄 처벌 규정(제160.1조 Penalty for hindering an officer)에서 공무원 업무방해죄(제153.1조)에 대한 벌금(fine)을 따로 규정하고 있음
 - 약식기소에 의해 처벌해야 할 경우 1천캐나다달러 이상 2만 5천캐나다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12개월 이하의 징역과 벌금 양자를 병과한다고 규정함
- 관세법 제160조에서 규정하는 처벌 외에 기타 관세법을 위반한 경우 약식기소 위반 및 처벌(제161조, Summary conviction offence and punishment) 규정에 따라 처벌됨
 - 1천캐나다달러 이상 2만 5천캐나다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를 병과함
- 제4장 이행(Enforcement)에서는 의장(governor in council)이 제정한 규칙 또는 법을 위반하였거나 관세법 또는 관세율법 또는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제4.1조 undertaking-수입자 및 운송업자가 관세법에 따라 지켜야할 의무)를 위반하였을 시 2만 5천 캐나다달러 미만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⁸⁰⁾

80) 관세법 제109.1조(Penalties and Interest)

〈표 Ⅲ-10〉 캐나다 관세법의 처벌 규정

규정	처벌유형 및 처벌수준
11 행위자(persons)(캐나다에 도착하는 모든 사람 및 승객, 승무원 등)	160(1) (a) 약식기소(summary conviction)에 의해 처벌해야 할 경우 - 5만캐나다달러 이하의 벌금(fine) 또는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 벌금과 징역 동시에 부과 (b) 기소범죄(indictable offence)에 의해 처벌해야 할 경우 - 50만캐나다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 벌금과 징역 동시에 부과 160(2) 만약 행위자가 43(2)를 위반하여 160(1)하에서 법원에 의해 기소되었을 경우 법원은 집행(compliance)을 위해 적절한 그 어떤 지시도 내릴 수 있음 (the court may make any order that it considers appropriate in order to enforce compliance with that subsection)
12 수입 물품의 보고(report of goods)	
13 수입 물품 제출 및 질문에 답할 의무 (Obligation to answer questions and present goods)	
15 불법적으로 수입된 물품 보고(Report of goods illegally imported)	
16 수입으로 간주되는 난파선(Wreck deemed imported)	
20(1) 물품의 이동(Transportation of goods)	
31 반출(Release)	
40 기록(Records)	
43(2) 기록의무(Compliance)	
95(1) 수출 보고(report) (3) 수출 물품 제출 및 질문에 답할 의무 (Obligation to answer questions and present goods)	
103(3) 물품의 유치 조건(conditions of custody)	
107(2) 금지 - 통관 정보 및 조항의 사용 (Prohibition - provision or use of customs information)	
153 거짓 진술, 관세회피(False statements, evasion of duties)	
155 불법적으로 수입된 물품의 보관, 요청, 제거(Keeping, acquiring, disposing of goods illegally imported)	
156 서식의 소유(Possession of blank documents)	
159 밀수(smuggling)	
159.1 물품의 재표시 위반(Offences re marking of goods)	
107(11) 통관 정보 보호를 위한 방법을 참조하는 위반(Measures to protect customs information)	

〈표 Ⅲ-10〉의 계속

규정	처벌유형 및 처벌수준
153.1 공무원 방해(hindering officer)	160.1 약식기소에 의해 처벌해야 할 경우 1천 캐나다달러 이상 2만 5천캐나다달러 이하의 벌금(fine) 또는 12개월 이하의 징역과 벌금 양자를 병과
160조 이외의 법을 위반했을 경우	161. 160조 이외의 법을 위반하였을 시 약식기소에 의해 처벌받거나 1천캐나다달러 이상 2만 5천캐나다달러 이하의 벌금(fine)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를 병과한다고 규정함
109.1 1) 의장(governor in council)이 제정한 규칙 또는 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관세법 또는 관세율법 또는 4.1 의무(undertaking-수입자 및 운송업자가 관세법에 따라 지켜야할 의무)	109.1 1) 2만 5천캐나다달러 미만의 벌금(penalty)이 부과됨 2) 상동

자료: 캐나다 관세법

라. 형법상 처벌 규정

- ☐ 형법(Criminal Code)상 수출입 관련 위반 행위 및 처벌은 제3장 화약무기 그리고 기타 무기들(Firearms and Other weapons) 및 형법 제7.1장 불법마약 사용을 위한 문헌 및 기구(Instrument and Literature for Illicit Drug Use)에 규정되어 있음
- ☐ 형법상에서 규정하는 문헌(Literature)⁸¹⁾은 불법 마약 소비, 준비, 생산, 지지, 촉진, 묘사, 설명 등을 위한 문서 또는 비디오를 모두 포함함
- ☐ 허가받지 않은 자가 고의로 무기류를 수입하였거나 자동화기의 부품을 수출입하여 기소범죄로 처벌해야 할 때 형법 제103조(2)에 따라 초범일 경우 3년, 재범일 때 5년의 징역이 부과됨

81) 형법 제7.1장

- 허가받지 않은 자가 고의성 없이 무기류를 수입하였거나 자동화기의 부품을 수출입하여 기소범죄로 처벌해야 할 때 형법 제104조(2)에 따라 초범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되거나 약식기소로 처벌할 수 있음
- 고의로 불법마약 사용을 위한 문헌 및 기구를 수출입하거나, 제조, 촉진 또는 판매하여 약식기소 범죄로 처벌해야 할 때 형법 제462.2조에 따라 초범일 경우 10만캐나다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를 병과함
- 재범 혹은 지속적 위반일 경우 30만캐나다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를 병과함

〈표 Ⅲ-11〉 캐나다 형법상 수출입 관련 처벌규정

위반 행위	처벌 수준
103. (1) 연방 총기법(Firearm Act)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자가 고의로 a) 화약무기, 금지무기, 제한무기, 금지장치 또는 그 어떤 금지 탄약 또는 b) 자동화기의 부분품 또는 구성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위반	103.(2) 기소범죄로 처벌해야 할 경우 10년 이하, 최소 1년의 징역이(imprisonment) 부과됨 - 초범일 경우 3년의 징역이 부과됨 - 재범 혹은 지속적 위반의 경우 5년의 징역이 부과됨
103. 2.(1) 103.1)에서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기타 다른 경우의 위반(any other case)	103.2.(1) 10년 이하 최소 1년의 징역이 부과됨
104. 연방 총기법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자가 a) 화약무기, 금지무기, 제한무기, 금지장치 또는 그 어떤 금지 탄약 또는 b) 자동화기의 부분품 또는 구성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위반	104. (2) 기소범죄로 처벌해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됨 또는 약식기소로 처벌할 수 있음(punishable on summary conviction)
462.2 고의로 불법마약 사용을 위한 문헌 및 기구를 수출입하거나, 제조, 촉진 또는 판매하는 위반	462.2 약식기소 범죄로 처벌해야 할 경우 a) 초범일 경우 - 10만캐나다달러 이하의 벌금(fine) 또는 - 6개월 이하의 징역 - 또는 양자를 병과함 b) 재범 혹은 지속적 위반이 경우 - 30만캐나다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 1년 이하의 징역 - 또는 양자를 병과함

자료: 캐나다 형법

마. 기타 FTA 관련 처벌(특별 수입조치법(Special Import Measures Act)상 처벌 규정)

- ☐ 캐나다는 NAFTA, 칠레, 이스라엘, 코스타리카 등의 나라들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각 협정마다 이행 규정을 제정하고 이행에 따른 법적절차는 관련 국내 법규를 따르고 있음⁸²⁾
 - NAFTA Rules of Origin Regulations(SOR/94-14), CCFTA Rules of Origin Regulations(SOR/97-340), CIFTA Verification of Origin Regulations(SOR/97-75) 등의 규정이 있음
- ☐ 캐나다는 관세법 이외에 특별수입조치법의 제1.1장 NAFTA국가의 물품에 관한 분쟁(Dispute settlement respecting goods of a NAFTA country)에 대한 위반은 제 77.034조(Offence)에, 제2장 미국의 물품에 관한 분쟁(Dispute settlement respecting goods)에 대한 위반은 제77.26조(Offence)에, 제3장 일반적인(General) 위반은 제 96.4조(Offences)에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 ☐ 제96.4조에서는 제84조(3)(Disclosure to Council)에서 규정하지 않는 목적으로 정보를 공개했거나 대통령이 부과하는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 제77.034조에서는 제77.021조(2)를 위반했거나 정보공개 규칙 위반 또는 규정정보의 사용 및 NAFTA 회원국의 법하에서 제정된 공개지시, 보호지시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 제77.26조에서는 77.21조(2)를 위반했거나 정보공개 규칙 위반 또는 규정정보의 사용 및 미국의 법하에서 제정된 공개지시, 보호지시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82) 김한성 · 조미진 · 정재완 · 김민성,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12

- ☐ 세 가지 위반행위는 모두 기소 범죄의 경우 100만캐나다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약식 기소 범죄의 경우 10만캐나다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표 Ⅲ-12〉 캐나다 특별수입조치법상 처벌 규정

위반 행위	처벌 수준
96.4 (1) 위반(Offence) 84(3)(의회에 정보 공개-disclosure to counsel)에서 규정하는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공개하였거나 84(3)하에서 대통령이 부과한 조건 위반 (contravenes a condition imposed by the President)	96.4 (2) 벌칙(Punishment) - 기소범죄의 경우 100만캐나다달러 이하의 벌금(fine) 부과 - 약식기소의 범죄의 경우 10만캐나다달러 이하의 벌금 부과
77.034 (1) 위반 - 77.021 (2)기밀정보의 누설(Disclosure undertaking respecting confidential information) - 정보 공개 규칙 위반 또는 기밀, 개인정보, 소유권 또는 특권 또는 규정정보(prescribed information)의 사용 위반 - NAFTA회원국 법에서 제정된 공개 지시(a disclosure order) 또는 개인정보, 소유권 또는 특권 또는 규정정보의 보호지시(protective order)위반	77.034 (2) 벌칙 - 기소 범죄의 경우 100만캐나다달러 이하의 벌금 부과 - 약식기소의 범죄의 경우 10만캐나다달러 이하의 벌금 부과
77.26 (1) 위반 - 77.21 (2)기밀정보의 누설 - 정보 공개 규칙 위반 또는 기밀, 개인정보, 소유권 또는 특권 또는 규정정보의 사용 위반 - 미국 법에서 제정된 공개 지시 또는 개인정보, 소유권 또는 특권 또는 규정정보의 보호지시 위반	77.26 (2) 벌칙 - 기소 범죄의 경우 100만캐나다달러 이하의 벌금 부과 - 약식기소의 범죄의 경우 10만캐나다달러 이하의 벌금 부과

자료: 캐나다 특별수입조치법

- ☐ 수출입 통관에 관련된 각종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D-memoranda에서도 원산지 관련 세부규정을 다루고 있음
- ☐ Memorandum D11-4-2에서는 원산지 관련 사전 심사(Advanced ruling), 원산지 증명(Proof of origin)을 비롯한 관련 규정 위반 시 관세법 제160조에 따라 처벌받을 것을 명시하고 있음

- Memorandum D20-1-5에서는 수출자 및 생산자가 보관해야 할 서류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수출자는 원산지 증명 및 사전심사 관련 서류를 6년간 보관해야 함
 - 수출자는 원산지 증명서, 구매, 수입, 가격, 금액 납부영수증 등을 보관해야 함
 - 또한 사전심사 지원 서류, 지원확인증(receipt), 사전심사와 관련된 행정서류와 생산자로부터 받은 원산지 인증서류(물품이 원산지 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이 담긴) 등을 보관해야 함
 - 생산자는 구매, 가격, 금액 납부영수증을 비롯하여 물품의 생산을 위해 사용된 모든 직·간접 재료에 대한 내용과 사전심사 지원 서류, 지원확인증(receipt), 사전심사와 관련된 행정서류 등을 보관해야 함
 - 수입자는 원산지, 마킹, 구매, 수입, 가격, 금액납부, 사전심사 지원 서류, 캐나다에서 물품 처분 증명 등 서류를 수출자와 마찬가지로 6년 동안 보관해야 함

5. 싱가포르

가. 관세법 처벌 관련 법률 및 형법 총칙 배제규정

- 싱가포르의 관세 법령은 관세법, 수출입법, 수출입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세 관련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은 관세법 제15장 위반 및 처벌(Offences and Penalties)에서 규정하고 있음
- 그 밖에 수출입법 및 수출입 규정에서 관세관련 원산지, 수출입 신고, 정보의 수정 등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 싱가포르는 한국과 다르게 형법 배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형법 총칙 규정이 관세범죄에도 일반적으로 적용되며, 또한 관세범죄를 특별히 가중하여 처벌하는 별도의 법령이 존재하지 않음

나. 관세 형벌의 형태

1) 배수형 벌금제 및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 ☐ 싱가포르의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배수형 벌금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미통관 및 수출입 금지 물품 위반, 수하물 위반, 관세 회피 등에서 배수형 벌금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128L(2)에서는 포탈세액의 20배 이하 또는 5천싱가포르달러 중 더 높은 금액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하여 배수형 벌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벌금은 최소 5천싱가포르달러에서 최대 20만싱가포르달러까지 부과됨
- ☐ 싱가포르의 관세법(128(L1), 128(L3), 129, 133 등)을 비롯하여 수출입법 및 수출입 규정 모두 벌금과 징역의 양자를 병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2) 양벌규정 및 예비, 미수범의 처벌

- ☐ 싱가포르의 관세법은 양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법인이나 대리인 및 고용인이 행한 죄(관세법 141조 Offences by bodies of persons and by agents and employees)에 따라 회사 혹은 기업 등이 법을 위반했을 경우 무죄를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죄를 저지른 자가 처벌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범행이 그의 동의 없이 행해진 것이라는 사실과 범행을 막기 위해 모든 조치를 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함⁸³⁾
- ☐ 다만, 고용인이 고용 중에 혹은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행위한 경우 벌칙, 벌금 또는 몰수형, 누락, 작위 또는 부작위(punishment, penalty or forfeiture for any act, omission, neglect or default)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처벌함⁸⁴⁾

83) 관세법 제141조(1)(a),(b)

84) 관세법 제141조(2)

- 예비범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관세법 제140조 범행의 미수 및 교사(Attempts and abetments)에서 미수범 및 교사자를 본죄에 준해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3) 압수(Seizure) 및 몰수(Forfeiture)

- 법 위반 물품의 압수는(seizure of goods the subject of an offence) 관세법 제11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법을 위반 혹은 면허 등의 조건을 따르지 않는 경우의 모든 물품은 저장용품, 선박이나 자동차를 포함하여 200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두 압수될 수 있음(may be seized)
 - 관련 장부와 문서 또한 싱가포르 영토나 영해 모두에서 압수될 수 있다고 규정함
- 압수된 물품의 몰수(Goods liable to seizure liable to forfeiture)는 관세법 제12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에 따라 압수된 모든 물건은 몰수해야 함(liable to forfeit)
 - 관세법 제123조, 제124조, 제127조에서 규정하는 ‘물건(goods)’은 저장소, 포장물, 자동차(receptacles, packages, vehicles) 200톤 이하의 적하물 선박(vessels), 국제 화물 이외 항공기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함
- 관세법 제123조에서는 법원의 압수물건 처분명령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124조에서는 1달 이내에 소제기가 없는 물품에 대해 몰수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7조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압수되지 않았다면 압수비용은 보장되지 않음
- 싱가포르 관세법은 압수에 대해서는 “압수될 수 있다(may be seized)”고 하여 임의적 압수를 규정하고 있으며, 몰수에 대해서는 “몰수해야 함(liable to, 법적 의무)”이라고 하여 필요적 몰수를 규정하고 있음

4) 수출입 금지 물품의 객체

- 싱가포르에서는 수출입 금지 물품에 대해 장관이 관보에 통지하는 방법으로 구체적으

로 명시된 물품에 대해 절대적 혹은 조건부로 수출입을 금지한다고 하는 등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관세법에서는 구체적인 물품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미통관 물품 및 수입금지 물품 위반에 대해 128조F에서 규정하고 있음

□ 특히 물품과 어떤 식으로든 관련한 자(who is in any way concerned)를 유죄라고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수출입행위뿐 아니라 경유 등의 행위 또한 포괄하고 있음

□ 싱가포르의 음란 동영상 등의 사이버 밀수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다. 관세법상 처벌 규정

□ 싱가포르 관세법 제15장 위반과 처벌(Offences and Penalties)에서 각종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특히 제128조L(1)에 증빙서류 위조, 수출입 미신고, 무역거래 서류제출 거부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한 벌칙을 두고 있음

○ 증빙서류 위조, 수출입 미신고, 무역거래 서류제출 거부 등의 위법을 행하였을 경우 1만싱가포르달러 이하 또는 포탈세액 중 더 높은 금액의 벌금 혹은 12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를 병과함

□ 미통관(uncustomed) 물품의 수출입 위반, 관세회피, 수하물의 문제, 물품의 소유·저장·은닉 등의 문제, 면세제품과 관련된 위반, 물품의 불법 이동과 불법 면허 등의 위반은(128조D-128조K) 관세법 제128조L(2), 제128조L(3)에 따라 처벌됨

○ 담배와 관련 물품의 위반일 시 10배 이상 또는 5천싱가포르달러 중 더 작은 금액의 벌금이 부과됨

○ 일반적으로 포탈세액의 20배 이하 또는 5천싱가포르달러 중 더 높은 금액의 벌금이 부과됨

○ 다만 포탈된 세액을 규명하지 못할 경우 벌금은 5천싱가포르달러를 초과하여 부과

할 수 없음

- 관세법 제129조부터 제139조까지는 미통관 물품을 통한 거래, 허위서류 제출, 컴퓨터를 이용한 탈세 등의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128조와 달리 각 조항에 첨부된 처벌 규정에 따르게 됨

〈표 Ⅲ-13〉 싱가포르 관세법상 위반행위와 처벌 수준

조항	위반 행위	처벌 수준	
128(1)	사실과 다른, 부정확한, 미완성의 세관 신고, 원산지 증명서, 증빙서류의 작성 및 서명	128L(1)	- 1만싱가포르달러 이하 또는 포탈세액 중 더 높은 금액의 벌금 또는 - 12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 징역과 벌금 동시에 부과
128A(1)	증빙서류 위조		
128B(1)	수출입 미신고		
128C	무역서류 제출거부		
128D	부정한 방법에 의한 관세 회피 (fraudulent evasion)	128L(2)	(a) 포탈세액의 10배 이상(not less than 10 times) 또는 5천싱가포르달러 중 더 작은 금액의 벌금 (담배 관련 물품일 경우) (b) 포탈세액의 20배 이하(not more than 20 times) 또는 5천싱가포르달러 중 더 높은 금액의 벌금
128E	수하물 등에서 발견된 물품의 문제		
128F	미통관 물품(uncustomed) 및 수입금지 물품위반		
128G	미통관 물품 및 수출 금지 물품 위반		
128H	미통관 물품 및 금지물품의 수송, 선적, 하역 등 위반	128L(3)	- 단, 포탈세액을 규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벌금이 5천싱가포르달러를 초과할 수 없음 - 해당 범죄 및 기타 특정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a) 또는 (b)에 해당하는 벌금 또는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 징역과 벌금 양자를 병과
128I	물품의 소유, 저장, 양도 및 은닉 위반		
128J	면세제품과 관련된 위반		
128K	면허 없이 이루어지는 행위 및 세관에서부터 불법으로 물품을 이동시키는 위반		

〈표 Ⅲ-13〉의 계속

조항	위반 행위	처벌 수준	
129	답변 거부, 허위정보나 허위서류 제출	129	- 5천싱가포르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 12월 이하의 징역 또는 - 징역과 벌금 양자를 병과
131	컴퓨터 프로그램 혹은 데이터를 불법으로 수정하여 탈세하는 경우	131	- 초범 혹은 범죄행위가 10회 미만일 경우 5천싱가포르달러 혹은 포탈세액의 10배 중 더 작은 액수의 벌금 - 20회를 넘지 않는 자는 5천싱가포르달러 포탈세액 중 더 큰 액수의 벌금 - 탈세액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5천싱가포르달러의 벌금
132	미통관 물품을 판매, 구매하는 등 거래에 이용하여 이익을 획득한 자	132	- 10만싱가포르달러 이상 100만싱가포르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 6년 이하의 징역
133	주류에 유해 성분을 추가하여 저장하는 등의 위반	133	- 1만싱가포르달러의 벌금 또는 - 2년 이하의 징역형 - 또는 양자를 병과
134	환급과 관련한 위반	134	- 물품 가치의 3배 또는 5천싱가포르달러 중 더 큰 액수의 벌금
135	증류기(possesion of a still, etc)	135	- 5천싱가포르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 18개월 이하의 징역 - 또는 양자를 병과
139	부작위(omission), 과실(neglect)에 의한 위법(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함)	139	- 5천싱가포르달러 이하의 벌금

자료: 『한국 FTA 원산지 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2008); 싱가포르 관세법을 참고하여 연구자 재작성

라. 형법상 처벌 규정

- ☐ 수출입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싱가포르의 형법(Penal Code)에서 위조화폐의 수출입 처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위조화폐를 수출입했을 경우 벌금 혹은 최장 3년의 징역이 부과되며 최근 통용되는

위조화폐를 수출입했을 경우 벌금 혹은 최장 10년의 징역이 부과됨

〈표 Ⅲ-14〉 싱가포르 형법(Penal Code)의 수출입 관련 처벌 규정

조항	위반 행위	처벌 수준
237조	위조화폐의(counterfeit coin) 수출입 위조화폐거나 위조화폐로 간주되는(believe that the same in counterfeit) 화폐를 수출입하였을 시	벌금(fine) 혹은 최장 3년(extend to 3 years)의 징역(imprisonment)
238조	현재 통용되는 위조화폐의(counterfeits of current coin) 수출입 위조화폐이거나 위조화폐로 간주되는 화폐를 수출입하였을 시	벌금 혹은 최장 10년의 징역

자료: 싱가포르 수출입법

마. 기타 규정과 FTA 관련 처벌(수출입법 및 수출입 규정상 처벌)

- ☐ 싱가포르의 수출입법(RIEA, Regulation of Imports and Exports Act)과 수출입규정(RIER, Regulation of Imports and Exports Regulations)에서도 위반 행위와 그 처벌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 싱가포르의 수출입법에 따르면 거짓 신고(수출입법 제28조)를 했을 경우 및 공식적인 허가 없이 컴퓨터 데이터나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경우(수출입법 제29조) 1만싱가포르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양자를 병과함
- ☐ 부정확한 거래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수출입법 제28조A) 첫 번째 유죄 판결일 경우 10만싱가포르달러 이하 또는 물품 가격의 3배 이하 중 고액에 해당하는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를 병과함
 - 두 번째 유죄 판결일 경우 20만싱가포르달러 이하 또는 물품 가격의 4배 이하 중 고액에 해당하는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를 병과함

〈표 Ⅲ-15〉 싱가포르 수출입법(RIEA)의 처벌 규정

위반 규정	위반 행위	처벌 수준
수출입법 제28조 거짓 신고 등 (Penalties for false declaration ,etc)	- 물품 서류신고 시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확한 수신인에게 필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 거짓 인증서 발행 혹은 정보 위조 등	1만싱가포르달러 이하의 벌금(fine) 또는 2년 이하의 징역(imprisonment) 또는 병과
수출입법 제28조A 부정확한 거래 정보 제공 등 (incorrect trade descriptions)	수출입시 물품에 대한 부정확한 거래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정확한 거래 정보가 제공된 물품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첫 번째 유죄 판결: 10만싱가포르달러 이하 또는 물품 가격의 3배 이하 중 고액에 해당하는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병과 - 두 번째 유죄 판결: 20만싱가포르달러 이하 또는 물품 가격의 4배 이하 중 고액에 해당하는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병과
수출입법 제29조 허가 없는 (unauthorised) 컴퓨터 프로그램 및 데이터 수정 등	세관장의 승인 없이 컴퓨터 프로그램 및 데이터를 파괴, 삭제하거나 손상을 입히는 행위	1만싱가포르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병과

자료: 싱가포르 수출입법

- ☐ 미국, 일본, ASEAN,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많은 국가와 FTA를 맺은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관세법에 따른 일반적인 벌칙 조항에 근거하여 FTA 원산지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해 처벌 수준을 적용하고 있음⁸⁵⁾
- ☐ 원산지 증명과 관련한 처벌 시 거짓 신고를 한 경우(수출입법 제28조(1)(a)) 와 부정확한 거래 정보 제공 등(수출입법 제28조A(1)(a))에 대한 규정과 처벌 수준이 적용됨
- ☐ 수출입규정 '제3장 원산지증명서(PART III. CERTIFICATE OF ORIGIN)'에서 특혜 및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과 관련된 제반 사항과 보관 기간, 제시 의무 및 의무 위

85) 김한성 · 조미진 · 정재완 · 김민성,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12

반시 처벌 내용에 대해 규정함

- 원산지 증명서를 비롯한 발급 기록 등의 서류는 최소 2년 이상, 협정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함
 - 한국과 싱가포르 FTA 규정에 따르면 원산지 관련 서류는 5년 동안 보존해야 함
- 원산지와 관련한 위법행위는(Offences relating to origin) 수출입규정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허가 없이 원산지 증명서, 특혜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하였거나, 수출통 제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위반행위로 처벌해야 함(shall be guilty of an offence)
- 그 중 특혜 원산지 증명서 발행(Issue of preferential certificate of origin)과 관련하여 수출입규정 제24조B에 근거를 두고 있음
 -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원산지 증명서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협정 또는 관세국장(Director General)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함
 - 관세국장은 필요 시 생산자와 수출자에게 원산지 관련 보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서류의 보관기간을 지키지 못하거나 관세국장의 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지 못한 경우 위반 행위로 처벌해야 함(shall be guilty of an offence)
- 수출입규정 제45조 벌칙(45. Penalty)에서는 본 수출입규정상의 각 조항을 위반할 경우에 대한 처벌 내용을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첫 번째 유죄 판결의 경우 10만싱가포르달러 이하 또는 물품 가격의 3배 이하 중 고액에 해당하는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구금 또는 양자를 병과함
 - 두 번째 유죄 판결의 경우 20만싱가포르달러 이하 또는 물품 가격의 4배 이하 중 고액에 해당하는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구금 또는 양자를 병과함

- ☐ 따라서 수출입규정 제24조B 특혜 원산지 증명서 규정 위반 시 및 원산지 관련 위법행위 시에도 제45조의 벌칙 규정이 적용됨

- ☐ 각국 FTA의 진행 계획 및 세율, 원산지 증명서 작성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관 관세령(Customs Duty Order)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IV. 국제비교 및 시사점

1. 국제비교

가. 관세 처벌의 근거 법령 등

- 우리나라,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의 경우 관세법 처벌의 주요 근거 법령을 관세법으로 볼 수 있으며, 독일은 조세기본법에 따라 조세법과 관세법을 처벌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 밀수 등 중대 범죄가 형법에 규정되어 있음
 - 다만 독일의 경우에는 EU 공동관세법에서 위반사항과 관련된 처벌은 각국 내국법에 위임하고 있음
 - 독일의 경우 조세기본법상의 처벌 규정을 조세법과 관세법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관세법에서 형법의 총칙 규정을 배제할 경우 관세법상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조사 대상 주요국에서는 형법 총칙 배제 규정을 둔 경우는 없음
 - 따라서 관세법에 대해서도 형법의 규정이 일반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음
- 관세법 중 죄가 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불법 수출입 객체의 금액 등에 따라 특가법 규정을 적용해 가중처벌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주요국의 경우 특가법에 해당되는 가중처벌 법령을 따로 운영하는 경우가 없음
 - 다만, 독일의 경우 조세기본법 내 처벌 조항에 가중처벌에 대한 내용을 함께 규정하고 있음
 - － 관세포탈의 경우 중한 범죄를 가중처벌할 수 있는데, 중한 범죄에 고의로 대규모의 세금을 축소 신고하여 부당한 금전적 이익을 얻은 경우 등을 규정할 뿐 구체적

인 포탈 금액은 제시되지 않음

- 우리나라는 FTA특례법을 관세법보다 우선하는 법령으로 따로 제정한 반면, 조사 대상 주요국 중 자국의 FTA의 이행을 위해 별도 의무·처벌 등을 포함하는 법령을 제정한 국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관세법 내에 FTA 체결 국가별로 조항을 신설하여 관련 내용을 규율하고 있음

〈표 IV-1〉 관세 처벌의 근거 법령 국제비교

	우리나라	미국	일본	독일	캐나다	싱가포르
관세법 처벌의 주요 근거법령	관세법	형법	관세법	조세 기본법	관세법	관세법
형법 총칙 배제 여부	○	×	×	×	×	×
가중처벌법 존재 여부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	×	×	×	×
			(처벌 조항에 가중처벌 내용이 함께 존재)	(처벌 조항에 가중처벌 내용이 함께 존재)		
FTA 법령 존재 여부	○ FTA 특례법	관세법 내 조항	×	×	○ 특별수입 조치법	○ 수출입법 및 규정

나. 특별 처벌 규정

1) 형의 병과

- 우리나라는 형법을 비롯해 관세법에서 형의 병과 규정을 두고 있어 이에 대해 과도하다는 논란이 있어 왔음. 주요국의 관세법 처벌 관련 규정 비교 결과 형의 병과를 둔 국가는 미국,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이며, 따라서 조사 대상국 중 독일을 제외한 주요국

에서 형의 병과 규정을 두고 있음

- 형의 병과 규정은 국가마다 다르게 적용되지만 비교적 과중한 위반 행위,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밀수출입죄, 관세포탈죄에 징역과 벌금의 병과를, 싱가포르의 경우 증빙서류의 위조, 수출입 미신고 등의 행위에 징역과 벌금을 병과함

2) 배수형 벌금제도

- 우리나라와 싱가포르는 관세법 처벌에 대해 관세법 등에서 배수형 벌금제를 두고 있으나, 미국, 일본, 캐나다, 독일에는 배수형 벌금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 독일에서는 일수형 벌금제를 둔 것이 특징이며, 일본에서는 확정형 벌금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중한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위해 관세법상 동일 처벌조항 내에 배수형 벌금제를 규정한 경우가 있음
- 단, 배수형 벌금의 병과 규정은 우리나라 관세법에는 규정하고 있으나, 주요국의 관세법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단, 싱가포르 수출입법에서는 배수형 벌금의 병과 조항을 두고 있음
 - － 예를 들어, 싱가포르 수출입법(IEA) 28A. 부정확한 거래 정보 제공 등 - 10만싱가포르달러 이하 또는 물품 가격의 3배 이하 중 고액에 해당하는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를 병과함

3) 초범과 재범의 구분 처벌

- 우리나라에는 관세법에 대해 초범과 재범을 구분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나, 싱가포르와 미국, 캐나다의 경우 초범과 재범을 구분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함을 확인할 수 있음
- 싱가포르와 미국의 경우 특정한 범죄 행위에 대해 초범에 비해 재범의 처벌 수위가 높

으며, 캐나다의 경우에는 형법상의 수출입 규정 관련 처벌에 재범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이 있음

- 예를 들어 싱가포르 관세법상 관세 포탈 시 ① 초범: 포탈세액의 10배 이하 또는 5천싱가포르달러 중 더 작은 금액의 벌금, ② 재범(2회 혹은 그 이상): 포탈세액의 20배 이하 또는 5천싱가포르달러 중 더 높은 금액의 벌금에 처함

4) 관세법상 자수범에 대한 감경 규정

- ☐ 우리나라는 형법에 자수범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 규정⁸⁶⁾을 두고 있어 관세범에 적용 되도록 하고 있으나, 주요국 중 미국과 독일에서는 관세법(독일의 경우 조세기본법) 상에 범죄 행위의 자백, 자진 신고 규정을 두어 형을 경감해 주고 있음
- ☐ 미국은 전반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 독일의 경우에는 조세포탈 행위에 대해서만 자수범에게 형을 경감해주고 있음
 - 다만, 조사가 시작됨 또는 시작될 것임을 알고 자수를 하는 경우에는 형의 경감을 인정하지 않음

5) 가중처벌법의 존재 여부

- ☐ 우리나라는 관세법상의 관세 형벌 이외에도 범죄 관련 금액에 따라 특가법의 규정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으나, 조사 대상 주요국의 경우 별도로 관세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둔 국가는 없음
 - 주요국에 대한 검토 결과, 특가법은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관세 범죄 행위 처벌에 있어 하나의 특징으로 볼 수 있음
- ☐ 다만, 독일의 경우 조세포탈법의 처벌 조항 내에 죄가 중한 경우의 사유를 열거하고,

86) 형법 제52조(자수, 자복) ①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가중처벌 형량을 명시함으로써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 가중처벌의 사유는 고의로 대규모의 세금을 축소 신고하여 부당한 금전적 이익을 얻은 경우 등 5가지이며, 본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대신 6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함을 규정함

- 일본의 경우 관세포탈법과 밀수품 취득죄에 있어 범죄와 관련된 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각 처벌 조항에서 배수형 벌금제로 가중처벌을 규정함

6) 양벌 규정

- 우리나라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관세 위반행위(제277조 과태료 제외)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도 양벌 규정을 두고 있음
 - 단, 일본의 경우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벌금형만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는 차이점이 있음
 - 그 밖에, 미국의 경우 밀수에 있어 법인이 밀수에 사용된 선박에 대한 권한을 지니고 있을 경우 그 법인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다른 위반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7) 미수범 및 방조자 등의 처벌

- 미수범, 예비범, 방조자 등의 처벌에 있어 우리나라는 미수범의 본죄 처벌, 예비범은 2분의 1 감경 처벌, 방조자는 정범에 준해 처벌하고 있으며, 주요국에서도 대체로 관세범죄 행위의 미수범에 대해서는 본죄에 준해 처벌하는 경우가 많았음
- 미국과 싱가포르의 경우 관세법상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으며, 예비범과 방조범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조항이 존재하지 않아 형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캐나다의 경우에는 미수범, 예비범, 방조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관세법상에 없으므로 형법의 내용을 따르는 것으로 파악됨

- 일본은 관세법에서 미수범과 예비범에 대해 위반 행위별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 관세포탈 예비자 및 미수범에 대하여는 모두 기수범과 동일하게 처벌, 수출입금지품 수출입(밀수)에 대해서는 미수범은 기수 처벌, 예비범은 감경 처벌함
- 방조 및 교사자에 대한 처벌은 관세법상에 없어 형법 규정을 따름

〈표 IV-2〉 주요국의 관세법상 관세범 특별 처벌 규정의 국제비교

	우리나라	미국	일본	독일	캐나다	싱가포르
미수범 처벌	○	○	○	○	-	○
방조범 처벌	○	-	-	○	-	-
예비범 처벌	△(감경)	-	○	-	-	-
양벌 규정	○	×	○	×	×	×
형의 병과	○	○	○	×	○	○
초범/재범 구분 처벌	×	○	×	×	○	○

다. 주요 위반행위별 처벌 규정 비교

- 조사 대상 주요국 중 캐나다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밀수출입 행위를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하여 관세포탈 행위보다 강도 높게 처벌하고 있음
- 조사 대상국 중에서는 미국의 밀수출입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의 강도, 특히 밀수입의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 또는 양자 병과로 가장 높았음
- 단, 밀수의 경우 우리나라 특가법을 적용했을 때 무기징역과 벌금 병과로 형량이 가장 높아짐(물품원가 5억원 이상인 경우)
- 조사 대상국 중 우리나라와 미국은 밀수입과 밀수출을 구분하여 각각의 형량을 규정한 반면, 기타 국가에서는 밀수입과 밀수출을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금지품 수출입죄가 제269조(밀수출입죄)에 포함되어 있으나 밀수

출입죄보다 강도 높게 처벌하고 있음

- 주요국에서는 중대한 위반행위인 밀수출입 행위 및 관세포탈 행위 등의 처벌에 있어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독일의 경우 관세법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기타 국가의 경우 대체적으로 비교적 중대한 관세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의 양자를 병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표 IV-3〉 주요 관세법 주요 처벌 규정의 국제비교

	우리나라	미국	일본	독일	싱가포르	캐나다
밀수출입	수입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몰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 (특가법 - 몰품원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몰품원가 2배의 벌금 병과)	20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 또는 양자 병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엔 (70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	6개월 내지 10년 이하의 징역	SGD 1만 이하 또는 포탈세액 중 더 높은 금액 또는 12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병과	(a) 약식기소 (summary conviction)에 의한 처벌: CAD 5만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병과
	수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몰품원가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 (특가법 - 몰품원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몰품원가의 벌금 병과)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 또는 양자 병과				CAD 5만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병과
관세포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 관세액의 5배와 몰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 (특가법 - 포탈세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포탈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 병과)	2년 이하 징역 혹은 벌금 또는 양자 병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엔 이하 벌금 또는 병과 (포탈 금액의 10배가 500만엔을 넘는 경우, 벌금은 500만엔~포탈 금액의 10배 상당 금액 이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포탈세액의 20배 이하 또는 SGD 5천 중 더 높은 금액의 벌금 반복적 위반일 시 위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병과	(b) 기소범죄 (indictable offence)에 의한 처벌: CAD 50만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병과

〈표 IV-3〉의 계속

	우리나라	미국	일본	독일	싱가포르	캐나다
허위신고 ¹⁾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 또는 양자 병과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	EUR 5,000 이하의 과태료	SGD 1만 이하 또는 포탈세액 중 더 높은 금액의 벌금 또는 12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병과	
금지품 수출입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 (특가법 - 물품가액 1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과 물품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 병과)	^{- 2)} (개별법)	(금지품 수출입 행위를 밀수출입으로 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포탈세액의 20배 이하 또는 SGD 5천 중 더 높은 금액의 벌금 반복적 위법일 시 위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병과	^{- 2)} (개별법)

주: 1) 우리나라 허위신고죄에는 수출입 신고 시 품명·수량·가격 등의 사항을 허위신고한 자 등이 해당되어 비교적 경미한 처벌하고 있으나(신고율을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는 밀수죄에 해당) 국가별 '허위신고(false declaration)'로 표현된 죄목 내 세부 행위가 상이하여 처벌 수위에 상당한 차이가 남
 2) 미국과 캐나다는 모든 금지품 수출입에 대한 처벌 규정이 관세법상 조항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관련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음(예: 미국 내 총기류 반입 금지 및 처벌 조항의 경우 연방형법(18 U.S.Code) 내 규정)

2. 시사점

-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의 관세법 처벌의 근거 법령과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으나, 국가 간 단순 국제비교를 통한 시사점 도출에는 한계가 있음
 - 각국의 법률 발전 역사와 배경, 산업구조, 국가 상황 등이 매우 상이함에 따라 법체계가 다르며, 이러한 사실은 국가 간 상당 수준의 표준화를 이루어온 관세법도 예외가 아님
- 따라서 국가 간 유사한 위반 행위별 처벌 수위의 비교, 미수범·방조자 등의 처벌 수위 단순 비교 등을 통해 현행 법령 또는 제도상의 개선점을 제시하는 것에는 어려움과 위험 부담이 있음
- 이러한 한계를 감안하여 시사점으로는 향후 우리나라 관세법 처벌 규정의 개정 시 고려해 볼 만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함
 - 단, 본 시사점은 법률적인 측면에서가 아닌 관세 제도적 측면에서의 의견이므로 입법 한계적 측면은 고려되지 않았으며, 연구자의 개인적 소견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가. 초범과 재범 간 구분 처벌(벌금형)

- 현재 우리나라 관세법 처벌 규정상 벌금형 범죄에 대하여는 위반 횟수에 따른 차등 처벌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범죄의 위반 횟수에 따른 처벌은 관세법령에 규정 되어 있지 않음
 - － 우리나라는 법령에 의한 가중처벌, 감경보다 검사, 판사에게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검사의 구형 시, 판사의 선고 작량 감경 시 범죄의 횟수에 따른 처벌의 가중과 경감을 조정하고 있음
 - 형법에서 누범⁸⁷⁾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을 두어 금고형 이상, 즉 징역형의 관세법에

87)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함(형법 제35조)

는 누범 규정이 적용되어 형기 연장이 가능함

- 또한, 「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에서는 과태료 처분 위반행위에 대해 위반 차수에 따라 과태료에 차등을 두고 있음

- 싱가포르의 경우 특정 관세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관세 규정에 벌금형 범죄에 대해, 초범과 재범을 구분하여 형을 달리하고 있는데, 이는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 노력으로 볼 수 있음

- 예: 싱가포르 관세법상 관세포탈 시 초범에 포탈세액의 20배 이하 또는 5천싱가포르달러 중 더 높은 금액의 벌금, 재범에는 초범에서 정한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둘을 병과함

- 따라서 현재 비교적 경미한 위반행위인 관세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 행위보다는 형벌 처벌 대상인 비교적 과중한 위반 행위에 대해 재범 방지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관세법에 일정 횟수 이상의 범죄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또는 위반 차수에 따른 가중 처벌 규정을 마련한다면, 범죄의 재발 방지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나. 형의 감경 대상자에 대한 규정

- 최근, 형법상 책임주의원칙⁸⁸⁾ 구현을 위해 관세법 내 일부 형법 총칙 배제 규정을 일부 삭제⁸⁹⁾하면서 관세법상 형사 미성년자, 심신 미약자, 농아자 등에 대한 형법 총칙 배제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그들의 형이 감경됨(2010년 1월)

- 기존에는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도 관세법 위반 처벌 시 벌금형으로는 처벌이 가능했으며, 심신 미약자와 농아자는 벌금 처벌 시 형을 감경하지 않았음

- 그러나 개정 이후, 형사 미성년자는 처벌이 면제되며, 심신 미약자 및 농아자는 형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되었음

88) 책임이 없으면 형벌이 없다고 하는 근대법상의 기본 원칙, 두산백과

89) 대한민국 관보 제17165호, 2010.01.01

- 관세법에서 형법 총칙배제 규정을 축소하면서 형법 총칙과 점차 일치되어 가고는 있으나, 관세법이 다른 범죄와 구별되는 특수성을 고려해보았을 때, 어느 정도의 처벌 수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음
 - 1957년부터 50여 년간 관세법에 고유하게 유지되어 있던 본 규정의 존재 이유를 감안하여야 할 것이며, 전과자 양상 예방을 위한 차원이라면 벌금형(형벌)이 아니라 질서벌(과태료)로 처벌해서라도 관세 범죄 예방 효과를 두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심신 미약자의 경우는 제외하더라도, 형사 미성년자와 특히 농아자에 대한 관세 처벌 축소는 관세 범죄 행위의 형태(서류를 통한 행정 행위, 수입품 휴대 반입 등)를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임
 - 1995년 일본이 형법에서 농아자의 형 감경 규정을 삭제한 바 있어 이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임

다. 관세 무세품에 대한 처벌 문제

- ITA⁹⁰⁾등 무관세 협정 물품의 수입 확대, 최근 FTA로 인한 무관세 물품의 수입 증가 등으로 관세가 무세이거나 영세율인 물품의 수입 증대가 예상되며, 관세포탈죄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서도 위법·탈법한 수입 물품의 증가가 문제될 수 있음
 - 관세법 제270조 관세포탈죄의 객체는 관세 유세품이라는 해석에는 이견이 없으며, 이로 인해 무관세 수입 물품과 관련한 위법한 행위의 처벌이 문제됨
- 관세의 납부 대상은 아니나 부가가치세 또는 개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하는 물품의 수입 시, 탈세의 목적으로 수입 가격을 낮추어 신고하는 경우에 관세법상 관세 포탈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음
 - 관세 포탈죄로 처벌할 수 없다면, 수입 물품임에도 조세법 처벌법 등 기타 법령에 근거하여 처벌해야 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

90)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컴퓨터·반도체 등 첨단산업 교역 자유화를 위해 이런 정보기술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의 교역을 무관세화하는 정보기술협정

- 관세 감면 물품에 대하여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 예를 들어 관세 감면 제도에 따라 100% 면세 대상인 장애인용품의 경우, 국가보조금을 많이 수령하기 위해 수입가격을 높게 조작하면 현행 법령상으로는 관세 포탈이 아닌 허위신고죄 처벌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사한 범죄의 지속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관세 무세품에 대하여도 위법 행위가 발생했을 시 명확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 거의 모든 수입 물품에 관세가 부과되던 시기의 관세 형법은 관세 무세화 추세를 반영하여 그 대상을 변경하고, 근거가 되는 처벌 법령을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

참고문헌

- 관세청, 『미국 관세법』, 영한대역본, 2010, pp. 12~13.
- 김성문, 「2012 국외훈련검사」, 『연구논문집』, 제27집, 법무연구원, 2012.
- 김용일 · 류수현, 『관세법론』, 무역경영사, 2013. 3.
- 김유찬 · 이유향, 『주요국의 조세제도, 독일』, 한국조세연구원, 2009.10.
- 김재식, 「관세법상 수출입금지품 관련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창간호, 한국관세학회, 2000.
- 김한성 · 조미진 · 정재완 · 김민성,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12.
- 박영기, 『관세제재법』, 2009.
- 법무법인 광장, 『관세형법의 개선방안』, 2009.
- 윤동호, 「관세법의 벌칙규정의 체계화방안 연구」, 『법조』, 법조협회, 2013.4.
- 이병태, 『법률용어사전』, 법문북스, 2010.01.
- 정재완, 『관세법』, 무역경영사, 2014.01.
- 정재호 · 마정화 · 정경화, 『주요국의 통관제도 및 개정교토협약 유보조항 조사』, 한국조세연구원, 2009.12.
- 조미진, 『주요국의 통관제도: 캐나다편』, 한국조세연구원, 2013.
- 한국법제연구원, 『독일 조세기본법상 처벌 규정』, 2007.
- 최용채, 「관세 행정상 조사업무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2004.
- JURIS BMJ, www.gesetze-im-internet.de
- 세계법제정보센터, www.world.moleg.go.kr
- 세계관세기구, www.wcoomd.org
- 일본 관세국, www.customs.go.jp

싱가포르 관세청 <http://www.customs.gov.sg/topNav/hom/index.html>

캐나다 이민국 벌률 사이트 <http://www.cbsa-asfc.gc.ca/menu-eng.html>

코넬대학교 미국 법률 사이트 <http://www.law.cornell.edu/uscode/text>

관세연구 14-01
주요국의 관세법 처벌 규정에 관한 연구

2014년 9월 23일 인쇄

2014년 9월 30일 발행

저 자 정재호 · 김수영 · 노영예

발행인 옥동석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TEL: 2186-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및
인쇄 고려씨엔피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ISBN 978-89-8191-726-5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